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 보고서

2018. 3. ~ 2019.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CONTENTS

인사말

02 발간사(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03 격려사(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04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화보

08 의정활동

행복의회 규정

12 1. 운영규정
20 2. 윤리헌장
21 3. 행동강령

행복의회 의정활동 현황

24 1.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한 의제 발굴
24 1-1.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 & 원탁토의
26 1-2.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28 1-3.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30 2.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32 2-1.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 제안서 전달
33 2-2.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34 2-3.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결선 진출
35 2-4.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오디션
36 2-5.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 공모
36 2-6.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37 2-7.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38 2-8. 제3대 행복의회 본희의
40 3. 지속적인 의제연구 및 제안을 통한 정책 반영
40 3-1. 제3대 행복의회 정책반영 사례
42 4. 워크숍 및 교류활동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대외 홍보
42 4-1. 의제 발굴 워크숍
44 4-2. 교류 워크숍
46 4-3. 교류활동

행복의회 정책제안

[조례제안]

48 1.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
53 2. 성남시 양성평등 조례 개정
61 3. 성남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6 4.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72 5.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79 6. 성남시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 개정 및 성남시 안전귀갓길 조성 조례

[정책제안]

88 1. 성남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자유발언]

91 1. 고교 입시 엑스포 개최
92 2. 플립러닝 활성화와 전문강사 양성 (자유학년제의 올바른 정착과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안)

부록

100 1. 전체 회의록
125 2.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명단

발간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최선웅입니다.

먼저 제3대 행복의회와 지역 청소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해주신 행복의회 의원님들, 우리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주시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신뢰해주신 성남시청소년재단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주신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과 성남시청 관계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제3대 행복의회 의원들과 '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믿음 하나로 임해온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행복의회는 17만 지역 청소년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오랜시간이 걸려 힘들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약속"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청소년과 교육 분야 제안사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 및 심의를 위한 청소년 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기 행복의회는 선거제도를 도입해 더욱 더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행동하는 정치, 이에 응답하는 성남시를 구현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의회는 1년간의 경험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 더욱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보고서로 인해 성남시 17만 모든 청소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고 민주적인 성남시로 도약 해볼 것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행복의회의 목표는 청소년의 행복과 권리 증진 하나라는 것을 알아주셨길 바라며, 주체적인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최선웅

격려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은수미입니다.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청소년 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행복의회 의원 여러분은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청소년이 당당한 희망도시 성남' 구현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지역 청소년 의견수렴, 의제 발굴, 의제 연구, 정책 제안 등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생각을 전하며 진정한 참여를 실천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도움닫기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행복의회가 주최한 토크콘서트, 정책제안 포럼과 대회 등은 다양한 지역 현안 및 청소년 관련 이슈로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성남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시각에서 참신하고 건강한 의견들이 많이 제안되어 성남시의 중요한 청소년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바쁜 학업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성남시와 청소년들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간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9. 2.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은수미

01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란?

성남시 청소년의 교육, 환경, 인권, 행복 등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정책참여 기구입니다.

02 추진경과(History) 및 성과

| 연혁 |

일정	추진내용
2014. 11. 10.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조례 제정(성남시조례-제2812호)
2015. 5. 1.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 협약 체결(성남시)
2015. 7. 1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제1대 청소년의원 위촉(40명)
2015. 11. 7. ~ 11. 8.	성남시 청소년 제안주간 주관
2016. 5. 7.	성남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실시(의정활동 자문)
2016. 5. 17.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 개최(조례2건, 의안7건)
2016. 8. 10.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김병욱 의원 초청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6. 10. 29. ~ 11. 5.	2016. 청소년제안주간(정책 제안대회) 주관 운영(홍보, 사전준비 등) 청소년 100인 포럼 및 정책 제안대회 운영
2016. 11. 12.	제7회 전국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가(경기도 교육감상 수상)
2017. 1. 10.	제1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해단식
2017. 3. 11.	제2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위촉(31명)
2017. 5. 27.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 콘서트" 개최(청소년 정책제안활동)
2017. 8. 25.	"성남시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청소년 참여방안 및 예산 심의권 제안 성남시 예산법무과 방문(의견전달)
2017. 11. 4.	제3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포럼 운영
2017. 11. 11.	제7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2017. 12. 20.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운영(조례4건 등 총 10건 정책제안)
2018. 2. 24.	제2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해단식
2018. 3. 10.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위촉(28명)
2018. 5. 11. ~ 5. 15.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귀갓길 안전 등 4건)
2018. 5. 19.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원탁토의 「지금 말하러 갑니다」 개최
2018. 5. 24.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참가, 우수정책제안상 수상
2018. 6. 21.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은상 수상
2018. 8. 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청소년참여예산제 관련
2018. 9. 1.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운영
2018. 9. 1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등 7건)
2018. 11. 10.	제8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2018. 12. 21.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 운영(조례7건 및 정책 1건 등 8건 정책제안)

| 추진성과 |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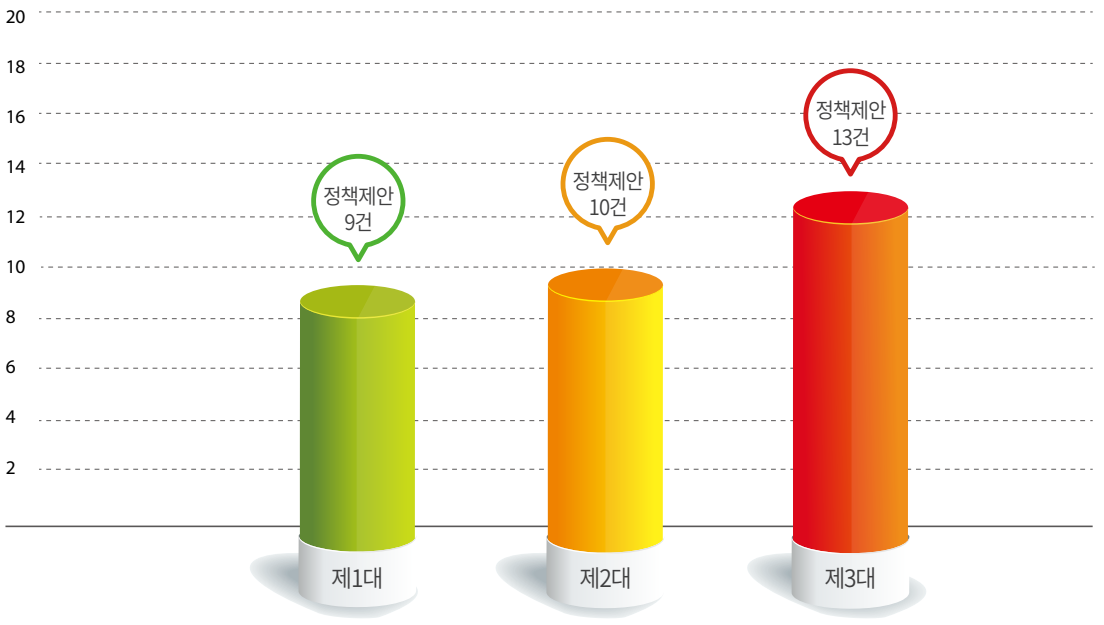

지속적인 의제연구 및 제안을 통한 정책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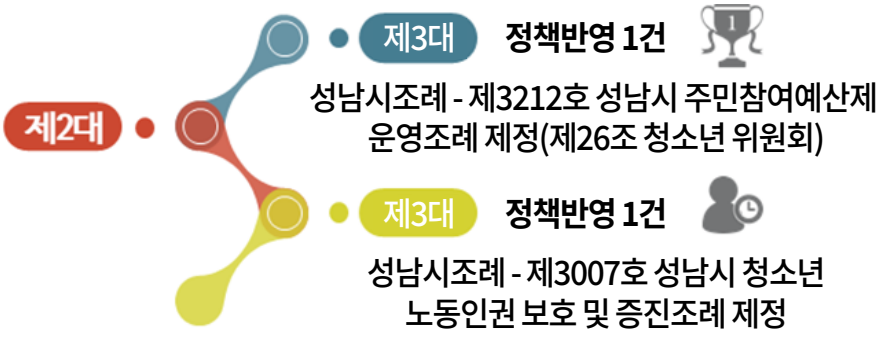

03 운영방향/내용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은수미)이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권역/교급별로 균등한 비율로 선발된 청소년 의원들이 각각 교육·문화, 환경·복지, 인권·권익 등 3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현안논의뿐 아니라 행복의회 내에서의 자치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내 운영을 위하여 혁신, 대외교류, 행사추진, 미디어 특별위원회 등 총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유연성 있게 관리하여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04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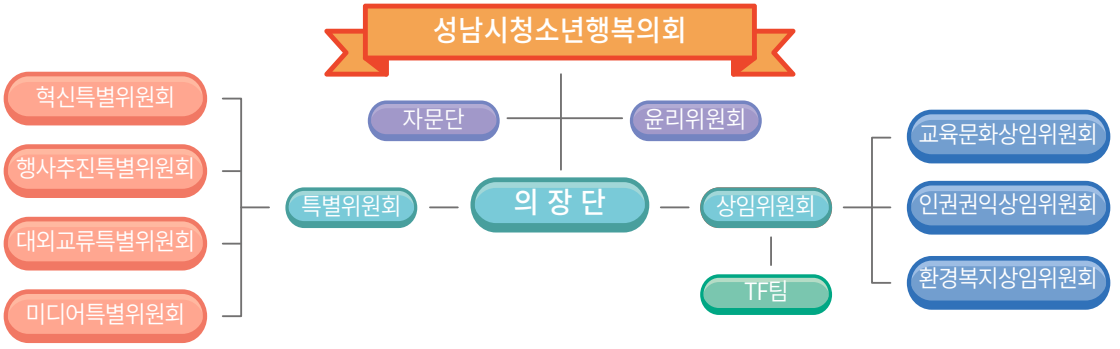

05 역할

- 성남시 청소년 대표활동 및 청소년정책제안, 모니터링
-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 정책 반영
-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제안
-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
-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원탁토론회 개최 등 청소년 참여의 장 발굴
- 상임위원회 활동

 - 교육문화·인권권익·환경복지 분야에 관한 사안심의

- 특별위원회

 - 혁　　신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규정 검토 및 보완, 평가주관
 - 행사추진 : 청소년 제안축제 추진 운영, 사회참여 관련대회 참여 등
 - 대외교류 : 타 시도 교류, 관내 중·고 학생회 교류 등
 - 미 디 어 : 행복의회 대·내외 홍보 및 SNS 관리 등

- 윤리위원회 : 의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심사
- TF팀 :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의제 발굴 및 연구, 정책제안

06 운영절차(정책반영)

▪ 전문교육(수시)
입법화 과정, 지방의회 역할, 회의기법, 의회운영 등

▪ 예비의제 발굴
-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포럼, 토크콘서트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정책제안서 검토 등 전체회의, TF팀별 회의를 통한 예비의제 발굴

▪ 정책과제 발굴 체계화 및 의정활동 자문
- 의제연구 워크숍을 통한 의제개발 및 체계화
- 전문가에 의한 입법, 의회운영 등 자문(자문단 운영)

▪ 상임위원회 및 TF팀활동
- 정책, 조례, 사업 등 의제화 과정 실시
- 분과별 TF팀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본회의 상정

▪ "시" 주무부서 협의 및 의정활동 자문
- 정책과제 실현가능성 논의
- 본회의 상정 최종 의제내용 확정

▪ 행복의회 본회의 실시
- 최종정책 과제제안 → 표결 → 정책결정(내부)

▪ 시의회 본회의 상정 추진
- 본회의 의원발의 추진(정책추진 현황 모니터링)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한 의제 발굴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 & 원탁토의 (5. 19.)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9. 1.)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11. 10.)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 제안서 전달(5. 11. ~ 5. 15.)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오디션(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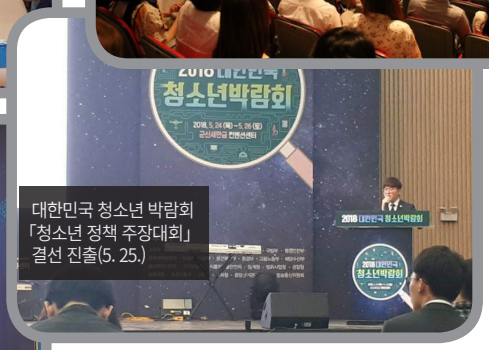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결선 진출(5. 25.)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5. 24.)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9. 12.)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8. 8.)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12. 21.)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12. 21.)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12. 21.)

제3대 행복의회 위촉식(3. 10.)

워크숍 및 교류활동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대외 홍보

제3대 행복의회 위촉식(3. 10.)

제3대 행복의회 위촉식(3. 10.)

의제발굴 워크숍(3. 10. ~ 3. 11.)

의제발굴 워크숍(3. 10. ~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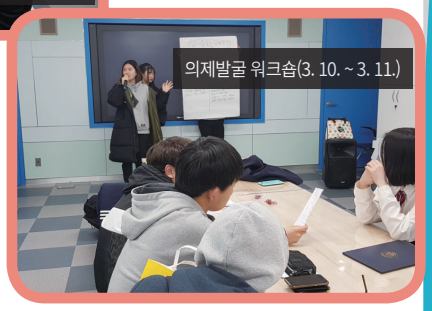
의제발굴 워크숍(3. 10. ~ 3. 11.)

교류워크숍 (7.21.~22.)

교류워크숍 (7. 21. ~ 7. 22.)

교류워크숍 (7. 21. ~ 7. 22.)

교류활동(10. 27.)

교류활동(10. 27.)

교류활동(10. 27.)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복의회 규정

2015. 8. 1. 제정	2017. 6. 10. 5차 개정
2015. 8. 15. 1차 개정	2017. 10. 14 6차 개정
2016. 6. 4. 2차 개정	2018. 5. 12. 7차 개정
2016. 8. 6. 3차 개정	2018. 11. 24. 8차 개정
2016. 12. 10. 4차 개정	2019. 1. 12. 9차 개정

0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5.8.1.] [2015.8.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의회는 "성남시 청소년 행복 의회"(이하 "행복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5. 8. 15.>

제2조(소재)

행복의회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목적)

① 행복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은 행복의회의 조직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역할)

① 성남시 청소년 대표 활동 및 청소년 정책제안, 모니터링 등

②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 정책 반영

③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 제안

④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

⑤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원탁토론회 개최 등 청소년 참여의 장 발굴

제5조(지위)

①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지위

② 성남시의 청소년 대표로서의 지위

제2장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의원

제6조(자격)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행복의회 의원의 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14세~19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구성)

행복의회 의원은 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 8. 6.>

① 행복의회란 성남시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 관내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0>

②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수는 4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8. 15.>

제8조(임기)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행복의회 제1대 청소년의원의 경우, 조례에 의거한 모집시기가 5월경이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제9조(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행복의회 의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촉·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의회 명의로 참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3회 이상 전체회의에 불참한 자
2.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에 대해서 참가율이 저조한 자 <개정 2016. 8. 6.>
3. 범죄, 의회 명의의 활동 등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불참 시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 12. 10.>

1. 불참사유에 따른 불참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의 불참사유서 및 증빙자료들을 보관·관리하여 해당 의원의 윤리위원회가 소집될 시 판단의 근거로서 참고한다.

<삭제 2016. 12. 10.>

③ 의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해촉 의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임한다.

1.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하게 사임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2. <삭제 2016. 12. 10.>

⑤ 그 외 지침 사항 <개정 2017. 6. 10.> <개정 2018. 5. 12.>

1. <삭제 2017. 6. 10.>
2. 본회의,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 5분 전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인적 사유에 의해 불참할 시에는 회의 개의 최소 1일 이전, 윤리위원회에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5. 12.>

가. 의원은 불참 이후 7일 이내에 자신이 불참한 회의에 대한 불참증빙서류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2.>

4. 단, 질병으로 인한 불참 시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의원은 회의 개의 익일 오전 12시까지 윤리위원회에 불참을 공지한다.

나. 약 복용기간이 개의 날짜에 포함될 경우 질병에 의한 불참으로 간주한다.

다. 전염성이 있는 질병 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중증 이상의 질병일 경우, 의원은 다음 회의 폐의까지 불참증빙서류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의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6. 12. 10.>

①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알 의무를 가지며, 그에 따른 의견 반영 및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② 행복의회의 의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본 의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행복의회의 의원은 본 의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행복의회의 의원은 본 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의무를 가진다.

⑤ 행복의회의 의원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 의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⑥ 행복의회의 의원은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⑦ 행복회의 의원은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⑧ 행복의회의 의원은 의회 활동에 불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참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6. 12. 10.>

제11조(의원의 표창) <개정 2016. 8. 6.>
의원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행복의회 윤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① 행복의회는 의장, 부의장, 서기, 교육문화상임위원장, 인권권익상임위원장, 환경복지상임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5. 8. 15.> <개정 2016. 6. 4.>
② 행복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5. 8. 15.>

제13조(청년 정책자문위원) <신설 2018. 5. 12>
① 행복의회는 '청년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청년 정책자문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청년 정책자문위원은 의제 상정권을 갖는다. 다만, 의장의 재가를 거친 후 의장 발의로 상정한다.
④ 청년 정책자문위원은 회의 참석권과 회의에서의 발언권을 갖는다. 다만, 의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⑤ 의장은 청년 정책자문위원의 의제 상정안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⑥ 청년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은 정책자문에 한정한다. 그 외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간사·의장단의 협의 후에 청년 정책자문위원에게 의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자격)
① 의장 및 부의장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 8. 15.>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2. 10>

제16조(지위)
① 의장은 행복의회를 대표하며, 본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8. 15.>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정기 및 임시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각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행복의회 내의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① 행복의회의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② 규정 개정안은 발의하여 상정한다.

③ 행복의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본 의회에 상정한다.

④ 행복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복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비상대책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6. 8. 6.>

① 의장이 궐위되거나 의장단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 행복의회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때 성립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전임 의장단은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장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전체회의에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9조 (불신임) <신설 2016. 6. 4.> <개정 2017. 6. 10.> <개정 2017. 10. 14.> <개정 2018. 11. 24.>

① 전체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통과된다.

③ 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불신임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시, 제소를 당한 사람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즉시 지위를 상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불신임안 가결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제4장 활동과 역할

제20조(활동의 권한)

행복의회의 활동 전반의 집행은 의장이 맡는다. 단, 의장이 궐위 시 부의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의장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활동의 권한)

행복의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자치에 의한 의회 운영

1.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임시회의 운영

② 청소년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 활동

1.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제안
2. 의제 발굴 및 의제 모니터링
3. 청소년 원탁토론회,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아이디어공모전 등 개최
4. 성남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반영 채널 구축
5. 성남시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등

③ 청소년 의회 교류 및 홍보활동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2. 타 지역, 타 국가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와의 교류활동 등

제22조(위원회의 종류) <신설 2016. 6. 4.>

행복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 <신설 2016. 6. 4.>

제23조(특별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8. 5. 12>

① 행복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가입과 탈퇴는 자율적으로 하되, 가입·탈퇴 시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가입신청서 혹은 탈퇴사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8. 5. 12.>
④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10.>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4조(윤리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6. 8. 6.> <개정 2017. 6. 13.> <개정 2018. 5. 12>

① 의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각 한 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서 윤리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따르지 않는다.
③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TF팀) <신설 2018. 5. 12> <개정 2019. 1. 12.>

① TF팀은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다.
② TF팀에서 발의한 정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③ TF팀은 가입과 탈퇴를 자율적으로 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모든 의원이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TF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④ TF팀에 가입·탈퇴 시에는 해당 TF팀 팀장에게 가입신청서 혹은 탈퇴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TF팀은 TF팀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신설과 폐지는 자유롭다.
⑥ TF팀은 팀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 1인 이상의 체제로 구성한다.
가. 팀장과 서기는 중임이 가능하다.
⑦ TF팀 내 불성실한 의원에 대한 제소 발생 시 해당 TF팀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소속 의원의 2/3이 찬성했을 시 퇴출한다.
⑧ 어느 TF팀에도 소속되지 않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의원의 타위원회 및 TF팀 출석과 발언) <신설 2016. 6. 4.> <개정 2018. 5. 12.>

① 의원은 타 위원회 및 TF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 5. 12.>

제27조(상임위원회의 직무) <개정 2015. 8. 15.> <개정 2016. 6. 4.> <개정 2018. 5. 12.>

행복의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교육문화상임위원회

1. 교육·문화에 관한 사안심의 <개정 2018. 5. 12.>

② 인권권익상임위원회

1. 인권·권익에 관한 사안심의 <개정 2018. 5. 12.>

③ 환경복지상임위원회

1. 환경·복지에 관한 사안심의 <개정 2018. 5. 12.>

④ <삭제 2016.6.4.>

제28조(회의)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회의에는 본회의,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를 둔다.

① 본회의

1. 본회의는 연1회 이상씩 집회하며, 최종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기능을 한다. 의장단의 참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준수한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입법청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개정 2016. 12. 10.>

②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

1.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는 월2회를 주기로 회의 중, 의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여 공고한다.

③ 임시회의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활동 및 회의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
   2) 의회의 위원 과반수 필요성을 느낄 경우
2.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간사가 소집한다.
   1) 행복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논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29조(의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본회의와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행복의회 규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의장, 부의장 해촉은 의원투표로 의결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별 사업은 상임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

③ 각 특별위원회별 사업은 특별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의 의안은 회의 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상정해야 할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 상정할 수 있다.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 개정안: 2일
2. 제정 조례안 및 추진 사업안: 2일
3. 행복의회에서 추진할 의제: 2일

⑤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의 의안은 의원에게 하루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의장단 선거 <개정 2015. 8. 15.>

제30조 <삭제 2015. 8. 15.>

제31조(선거권)

행복의회의 의원은 당대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32조(선거 시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위촉워크숍 직후 전체회의에서 실시한다.

① 위촉워크숍은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

1. 위촉워크숍의 시기는 행복의회 위촉식 후 1달 이내로 한다.
2. 토론 및 정책 개발을 비롯한 향후 의제발굴로 일정을 구성하고, 해산 전 워크숍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②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선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직접·보통선거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의장, 부의장은 전체회의에서 행복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신설 2015. 8. 1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신설 2015. 8. 15.>

③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궐위 시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제34조(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제6장 통례적용

제35조(통례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례에 의하고, 통례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의회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① 본 규정은 2015. 8. 15. 일부 개정됨.
② 본 규정은 2016. 6. 4. 일부 개정됨.
③ 본 규정은 2016. 8. 6. 일부 개정됨.
④ 본 규정은 2016. 12. 10. 일부 개정됨.
⑤ 본 규정은 2017. 6. 10. 일부 개정됨.
⑥ 본 규정은 2017. 10. 14. 일부 개정됨.
⑦ 본 규정은 2018. 5. 12. 일부 개정됨.
⑧ 본 규정은 2019. 1. 12. 일부 개정됨.

제3조(특별위원회 활동기한)

① 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2020. 2. 28.로 정한다.
② 대외교류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2020. 2. 28.로 정한다.
③ 의제발굴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6. 3. 1.부터 2016.12. 31.로 정한다. <폐지>
④ 행사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성남시청소년제안주간 폐막일까지로 정한다.
⑤ 미디어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17. 4. 8.부터 2019. 2. 28.로 정한다. <폐지>
⑥ 정책연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19. 4. 1.부터 2020. 2. 28.로 정한다.

제4조(특별위원회의 직무) <신설 2017. 4. 8.> <개정 2019. 1. 12.>

행복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혁신특별위원회
  1. 행복의회 규정 개정
  2. 행복의회 모니터링

② 대외교류특별위원회
  1. 타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추진

③ 행사추진특별위원회
  1. 행복의회 내의 행사 추진
  2. 행복의회 홍보

④ 정책연구특별위원회
  1. 청소년 의견 수렴
  2. 행복의회 소통창구 운영 및 관리

0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헌장 [제정 2016. 4. 3.]

우리는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임을 명심하고 청소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양심에 따라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가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헌장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장 (목표)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의 의사표명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
   ① 의원은 역시 청소년의 일원으로서 의원 개인의 자아실현에도 힘쓴다.
   ②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언급된 모든 가치의 실현을 지향한다. 특히 제12조 견해의 표시,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양심에 대한 자유, 제 15조 모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제2장 (활동자세)

1. 의원은 성남시 청소년의 의결권과 참여권을 위임받은 대변인으로서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사적인 감정으로 당파를 나누어 다투지 않는다.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을 대변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구로서, 성남시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활발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장 (청소년 교류)

1. 의원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청소년이 스스로의 행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의원은 성남시의 다양한 청소년과 관계를 가지고 소통한다.

제4장 (품위)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모인 집단으로서 의원은 성남시청소년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성남시 청소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2. 의원은 시민의식에 준하는 행동을 한다.

제5장 (투명성)

1. 의정 전반에 있어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6장 (평등)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모든 의원은 평등함을 근간에 둔다.

0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동강령 [제정 2016. 4. 3.]

제1장 (근간)

① 이 영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의원은 자신에 의해 다른 의원이 부당한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은 차후 필요시 상황에 맞게 추가할 수 있다.

제2장 (활동자세)

④ 의원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사업상 객체가 아닌 청소년 권리실현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의원의 결정사안(일정, 사업 추진, 의제 발굴 등)은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의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나. 청소년의 대표자로서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다. 청소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실현한다.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특별한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밝힌다.

⑥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을 금지한다.

가.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

나.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다. 의원은 의회 활동 시, 개인적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권리 남용 금지)

⑦ 개인의 영달, 사욕을 위하여 의원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 의회 내에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우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수혜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평등)

⑧ 의원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의원 간의 인신공격 및 회의 중 비속어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나. 연소(年少) 의원들 또한 연장(年長) 의원들과 같은 수준의 활동량을 충족할 의무를 지닌다.

다. 우리는 나이나 성별을 근거로 위계서열을 조성하지 아니하며 종교, 신념 또는 사상, 생활수준, 성적 지향, 학력 수준, 장애 또는 질병 등을 근거로 다른 의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라. 의원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제5장 (품위)

⑨ 의원은 의회를 대표하여 의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아니한다.

가.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 현황

01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한 의제 발굴

1-1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 & 원탁토의

| 개요 |

- 일　시 : 5. 19.(토) 10:00~17:00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 대　상 : 중·고 청소년
- 인　원 : 112명(청소년 111명, 청년코디네이터 1명)
- 내　용 : 개회식, 기조강연, 스케치북 토크쇼, 주제별 소그룹 원탁토의 등
- 주　최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금광청소년문화의집
- 참여기관 :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별다래」,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W」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가온누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한울」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WAY」,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청소년단「드림윙즈」

| 세부추진내용 |

구분	일시	주요내용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 원탁토의	5. 19.(토) 10:00~17:00	<기조강연> - 전문가 강연 · 김지수(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 주제 : 세상을 바꾸는 참여 민주주의 부탁해! - 청소년 강연 · 박주형(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장) ⇒ 주제 : 청소년 문제개론-PART1. 무뎌진 문제인식 감키우기 · 오소망(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 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 주제 : 청소년 문제해결에 한 걸음 다가가기 <스케치북 토크쇼> - 사전 사연신청을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 문제, 갈등, 고민 등을 주제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스케치북 토크쇼 진행 - 패널토의와 주제토의 방식을 결합한 토크콘서트 - 청소년 문제, 고민 사연을 바탕으로 현황조사, 해결방법, 정책제안 등 스케치북을 활용하여 진행자의 진행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 - 청소년 고민, 문제: 학교폭력, 술·담배, 청소년 도박, 교육, 성문제 - 진행자(1人), 전문가 패널(1人), 청소년 패널(3人)을 두어 토론 활성화 도모 [진행자] 이현우(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 [패널] · 김지수(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 김서영(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부의장) · 김선율(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위원장) · 홍준협(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효성고등학교 학생회장)

<주제별 소그룹 원탁토의>

- 6개 세부주제 구성 및 12모둠 편성
- 모둠별 행복의회 및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청소년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퍼실리데이터 역할 수행

연번	주제
1	청소년 노동 불이익(아르바이트 등)
2	학교폭력
3	청소년 교육(입시제도 등)
4	청소년 도박(스포츠 토토 등)
5	청소년 유해물 노출(술, 담배 등)
6	청소년 성문제(성교육 부재, 청소년 클럽, 룸카페 등)

- 문제점 분석, 해결방안, 실천과제 등 토의결과 발표

<주요일정>

시간		소요시간(분)	내용
부터	까지		
10:00	10:30	30	개회(내빈소개, 축사 및 격려사, 국민의례 등)
10:30	11:30	60	기조강연 - 전문가(1인) : 사회참여의 중요성 - 청소년(2인) : 청소년 문제의 현황 및 인식
11:30	13:00	90	스케치북 토크콘서트(패널토의 및 주제토의)
13:00	14:00	60	점심식사
14:00	16:00	120	주제별 소그룹 원탁토의
16:00	17:00	60	토의결과 발표 및 폐회

| 추진성과 |

-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원탁토의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수렴 및 다양한 청소년 현안에 대한 정책 의제 발굴
- 스케치북 토크쇼, 주제별 소그룹 원탁토의 등 다양한 토의·토론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및 재단 시설별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확장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 & 원탁토의 (5.19.)

1-2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 개요 |

- 일　시 : 2018. 09. 01.(토) 14:00~16:30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 대　상 : 성남시 관내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
- 인　원 : 150명(청소년 122명, 관계자 및 내빈 28명)
- 내　용 :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사례발표, 패널토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등
- 주최·주관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 협력기관 : 금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한솔고등학교 사회참여동아리「소시오」,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꿈드림청소년단, 경기청년유니온,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프로젝트팀「은인」,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청아한」

| 세부추진내용 |

<table>
<tr><th>구분</th><th>일시</th><th>주요내용</th></tr>
<tr><td>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td><td>9. 1.(토)
14:00~16:30</td><td>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사례발표>
- 청소년 단체 및 참여기구, 동아리 별 사회참여 활동 사례 발표
- 발표 주제 : 교육, 안전, 인권, 문화, 사회, 환경 등 활동분야의 자유주제
- 발표 형식 및 시간 : Ted 및 스토리텔링 형식 등 PPT 활용, 발표시간 7분 이내
- 발표내용 :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활동 동기 등), 세부활동내용, 정책제안, 기대효과, 향후계획 등
<table>
<tr><th>연번</th><th>기관명</th><th>참여기구명</th><th>주제</th></tr>
<tr><td>1</td><td>성남시청소년재단</td><td>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td><td>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td></tr>
<tr><td>2</td><td>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td><td>꿈드림 청소년단</td><td>학교 밖에도 청소년 있어요!</td></tr>
<tr><td>3</td><td>금광청소년문화의집</td><td>청소년 문화 혁신위원회</td><td>학교주변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 문화혁신</td></tr>
<tr><td>4</td><td colspan="2">경기청년유니온</td><td>“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라”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td></tr>
<tr><td>5</td><td>한솔고등학교</td><td>사회참여 동아리
「소시오」</td><td>여성인권
(위안부부터 임산부까지)</td></tr>
<tr><td>6</td><td>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td><td>프로젝트팀「은인」</td><td>스티커가 불러 일으킨 나비효과</td></tr>
<tr><td>7</td><td>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td><td>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td><td>청소년이 꿈꾸는 세상?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td></tr>
<tr><td>8</td><td>태조산청소년수련관</td><td>청소년운영위원회
「청아한」</td><td>청소년운영위원회의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td></tr>
</table>
</td></tr>
</table>

<패널토의>

- 토의주제 :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 토의내용 : 사례발표자가 패널로 참가하여 활동에 대한 어려움, 한계와 관련하여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 및 대안 제시

연번	기관명	성명	주제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최선웅	변화하는 참여의 트렌드, 유행을 따라가자
2	광주광역시 꿈드림 청소년단	이소은	학교 밖에도 청소년 있어요!
3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성남시 고등학교 대표자 협의회	임진호	청소년 정책 및 사회참여의 인식개선을 위한 선행사항
4	경기청년유니온	김강호	첫 번째 일·경험,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5	한솔고등학교 사회참여 동아리「소시오」	김나현	청소년들의 열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후원 온도계
6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이아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토론하고 참여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7	청소년운영위원회「청아한」	이조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요일정>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부터	까지		
14:00	14:20	20	개회식(내빈소개, 축사 및 격려사, 국민의례 등)
14:20	15:40	80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사례발표 - 청소년 단체 및 참여기구, 동아리 별 활동사례 공유
15:40	16:10	30	패널토의 - 주제 :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16:10	16:30	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추진성과 |

- 청소년 사회참여 사례 공유를 통한 사회참여의 동기부여 및 긍정적 인식 확대
-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내 동아리, 참여위원회, 의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참여기구 역할 및 활동영역에 대한 이해
- 활동사례 공유를 통한 사회참여에 대한 다각적 이해 및 인식 확장 도모
- 성남시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국"단위의 청소년 사회참여의 장 마련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참여"에 대한 관심 증진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9.1.)

1-3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 개요 |

- 일　시 : 2018. 11. 10.(토), 15:00~18:00(본선)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 대　상 : 성남시 관내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 개인 또는 팀
- 인　원 : 5,367명(설명회, 온라인 및 본선 참여인원 포함)
- 내　용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찾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 주최·주관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 후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일보

| 세부추진내용 |

<table>
<tr><th>구분</th><th>일시</th><th>주요내용</th></tr>
<tr><td>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td><td>11. 10.(토)
15:00~18:00</td><td>
주제: 아이디어, 블레스 유(IDEA, Bless U)
<본선>
- 제안내용 서류(예선) 및 발표심사(본선), 시상 등
- 제안대회 지원 활동(사회, 스텝, 심사위원, 청중평가단 등)
- 심사결과
<table>
<tr><th>훈격</th><th colspan="2">시상팀</th></tr>
<tr><td>계</td><td colspan="2">10팀</td></tr>
<tr><td rowspan="2">성남시장상</td><td>청소년문화 혁신위원회</td><td>고등학교 자유학기말제 -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td></tr>
<tr><td>정당한 가치</td><td>학교는 99%의 선생님과 1%의 학생으로 이루어진다</td></tr>
<tr><td rowspan="2">성남 교육장상</td><td>가온누리</td><td>이걸 토토가? -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td></tr>
<tr><td>별다래 B</td><td>안전한 성남시 주 · 인 · 공(주차공간 인in 공유어플)</td></tr>
<tr><td rowspan="2">성남시의회 의장상</td><td>은가비</td><td>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과 프로그램 운영방안</td></tr>
<tr><td>온(溫)리(利) 성남</td><td>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후원 온도계”</td></tr>
<tr><td rowspan="2">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상</td><td>너나들이</td><td>고용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td></tr>
<tr><td>1000%</td><td>학플리(학교 플레이 리스트; 학생들이 1000% 만족하는 고등학교 선택을 위하여)</td></tr>
<tr><td rowspan="2">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상</td><td>꿈나르샤</td><td>학교 통폐합, 그 곳에 청소년 문화 시설을!</td></tr>
<tr><td>티모태 (티끌 모아 태산)</td><td>청소년 의견 수렴함(청소년 신문고)을 만들어주세요.</td></tr>
</table>
</td></tr>
</table>

<주요일정>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부터	까지		
13:00	14:00	60	참가팀(본선진출팀) 리허설
14:00	15:00	60	참가자, 청중평가단, 심사위원 출석 확인
15:00	15:20	20	개회식(국민의례 및 인사말씀)
15:20	17:30	130	본선진출팀 제안내용 발표
17:30	17:50	20	초청공연 및 심사결과 집계
17:50	18:00	10	시상식 및 단체사진 촬영

| 추진성과 |

-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적, 공식적 사회참여의 장 및 정책제안 채널 운영
- 8년 연속 운영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 및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높은 인지도 확보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11.10.)

02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 정책의제 13건 발굴, 정책제안 24회 추진 |

구분			주요내용
1	[귀갓길 안전] 안전귀갓길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정책제안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안 및 LED 솔라표지병 추가 설치 및 그림자조명, 100원 택시 제도 시행 등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주민 제안사업 공모	LED방범등 대체설치와 비상버저 확대 설치 등 안전한 귀갓길 조성 정책 제안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 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및 「성남시 안전 귀갓길 조성 조례」 신설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및 「성남시 안전 귀갓길 조성 조례」 신설
2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안전귀갓길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정책제안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성남시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및 교통보호구역 설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확보
		2018.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오디션	성남시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기관에 인접한 편도 1차선 이내의 이면도로에서 대형차의 통행 제한 ⇒ 은상 수상(훈격 :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 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성남시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3	[Clean Seongnam] 성남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쓰레기 제로화 정책」의 시행을 통한 친환경 성남시 구축 및 투명자원봉투 정책 시행, 분리배출 매뉴얼 세분화 구축 등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주민 제안사업 공모	친환경 성남시 구축을 위한 성남시 쓰레기 봉투 투명화 사업 제안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	성남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 투명자원봉투 시범운영, 배출일련 번호 정책, 전봇대 쓰레기통 설치 등 쓰레기 제로화 정책의 시행을 통한 친환경 성남시 구축 제안
4	[청소년 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편성의 청소년 참여방안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성남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청소년을 대표하는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에게 부여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주민참여예산제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 심의에 대한 청소년 참여방안 제안 ① 별도 청소년 위원회 구성 ②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청소년위원회 역할 수행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 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성남시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편성 심의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안 ①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참여하는 방안 : 행복의회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참여예산 중 교육·청소년부분 제안사업 심사 ② 별도의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모집하여 교육 시행 후 교육·청소년부분 제안 사업 심사

5	[행복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매뉴얼 등 확장 정책제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위원회 주최 Inclusive Korea2018 국제컨퍼런스	청소년 노동인권, 비전과 대안 : 성남시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다른 지자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매뉴얼(정부의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책임 강화, 노동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고용주 및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홍보) 등 확장정책 제안 ⇒ 우수정책제안상 수상(훈격: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6	[성평등] 공중화장실 성별 표시 이미지 변경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주민제안사업 공모	성역할 경계 및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공중 화장실 성별표시 이미지 변경 제안
7	[행복의회] 행복의회 연임관련 규정 개정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 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제3조(의원 임기 및 사퇴) 관련 규정 개정 ① 현 체제 유지 시 :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 지원서 제출 후 심사를 통과하면 연임 할 수 있다. ② 선거로 선출 시 :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선거에 출마 후 당선되면 연임이 가능하다.
8	[성평등] 성남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 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성남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신설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	「성남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신설
9	[성평등] 양성평등 ⇒성평등 이분법적 성별제도 개선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 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개정
10	[Clean Seongnam] 쓰레기 줄이기 법적근거 마련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 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성남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신설
11	민주시민교육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신설
12	청소년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13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학생인권 조례 개정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개정

2-1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 제안서 전달

| 개요 |

- 기　간 : 2018. 5. 11.(금) ~ 15.(화)
- 장　소 : 해당 후보자 선거 사무소 등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 인　원 : 23명(5/11-11명, 5/15-12명)
- 내　용 : 활동의제 별 정책제안서 전달(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 제안 등)

| 세부추진내용 |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아동·청소년 귀갓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안 -「셉테드 정책」의 시행을 통한 길거리 안전의 확보 및 성립 ①「여성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곳 - 관악구 행운동」 벤치마킹 ②「LED 솔라표지병 추가 설치 정책」 ③「안심 귀갓길을 위한 '그림자 조명' 정책」 시행 ④ '100원 택시' 제도 시행
2	청소년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교통법안	-「성남시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 교통보호구역 설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확보
3	성남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쓰레기 제로화 정책」의 시행을 통한 친환경 성남시 구축 ① '나고야 시'의 「투명 자원봉투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효과적인 쓰레기 선별 수거법 확보 ②'일본 가미카스 마을'의 「waste- zero」 벤치마킹을 통한 효과적인 분리배출법 확보 ③「분리배출 매뉴얼 세분화 정책」 ④ 투명 자원 봉투 정책 시행
4	청소년 정책 예산심의권 부여	- 성남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청소년을 대표하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에게 부여 ① 성남시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② 사업부서 검토 시, 청소년 관련 정책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 청소년에게도 예산심의권을 보장해줌으로서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보장

| 추진성과 |

-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정책 제안 및 정책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제화 추진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 제안서 전달(5.11.~15.)

2-2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개요 |

- 일　시 : 5. 24.(목) 14:00~18:00
-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청년자문위원
- 인　원 : 2명
- 주　최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
-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내　용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확장 정책 '우리들의 노동인권조례 사용설명서' 제안

| 세부추진내용 |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청소년 노동인권, 비전과 대안	성남시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다른 지자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매뉴얼 (정부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책임 강화, 노동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고용주 및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홍보) 등 확장정책 제안

| 추진성과 |

- 우수정책제안상 수상 (훈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대회명	수상명	훈격	주최/주관	수상자	증빙자료
Inclusive Korea 2018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	우수정책 제안상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장	· 주최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홍승민, 김주환)	

-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추진과정을 통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활동 성과 공유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5. 24.)

2-3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결선 진출

| 개요 |

- 일 시 : 5. 26.(토) 10:00~12:00
- 장 소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컨벤션홀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청년자문위원
- 인 원 : 2명
- 주 최 :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
- 주 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내 용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확장 정책 제안

| 세부추진내용 |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청소년 노동인권, 비전과 대안	성남시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다른 지자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매뉴얼 (정부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책임 강화, 노동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고용주 및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홍보) 등 확장정책 제안

| 추진성과 |

- 청소년 정책주장대회 결선 진출
-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추진과정을 통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활동 성과 공유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결선 진출(5.25.)

2-4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오디션

| 개요 |

- 일　시 : 6. 21.(목) 14:00~16:00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홍승민)
- 인　원 : 1명
- 내　용 : 정책제안 공모 본선 진출 및 발표 오디션 참여, 은상수상 등

| 세부추진내용 |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성남시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기관에 인접한 편도 1차선 이내의 이면도로에서 대형차의 통행 제한

| 추진성과 |

- 우수정책제안상 수상 (훈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대회명	수상명	훈격	주최	제안내용	수상자	증빙자료
2018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은상	성남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성남시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홍승민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오디션(6. 21.)

2-5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 공모

| 개요 |

- 신청기간 : 2018. 6. 1.~7. 31
- 내　용 :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 공모 제출

| 세부추진내용 |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쓰레기0%	- 사업명 : 성남시 쓰레기봉투 투명화 사업 - 내용 : 투명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시행
2	성평등	- 사업명 : 공중화장실 성별 표시 이미지 변경 - 내용 : 공공기관 내 화장실 표지판을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대체 이미지로 변경
3	귀갓길 안전	- 사업명 : LED방범등과 비상버저 설치 - 내용 : 성남시 관내에 LED 방범등과 비상버저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률을 줄임으로써 안전한 귀갓길 조성

| 추진성과 |

- TF팀 별 공모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 의제화 추진 및 TF팀 활성화 도모

2-6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 개요 |

- 일　시 : 8. 8.(수) 13:00~14:00
- 장　소 :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홍승민)
- 인　원 : 1명
- 내　용 : 청소년참여예산제 관련 정책제안서 전달 및 관련 논의 등

| 세부추진내용 |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주민참예예산제 참여방안	주민참예예산제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 심의에 대한 청소년 참여방안 제안 ① 별도 청소년 위원회 구성　②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청소년위원회 역할 수행

| 추진성과 |

-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의제화 추진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8.8)

2-7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 개요 |

- 일 시 : 2018. 9. 12(수), 18:00~19:00
- 장 소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실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 인 원 : 6명
- 내 용 : 정책제안서 전달 및 의제 피드백 등

| 세부추진내용 |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제3조(의원 임기 및 사퇴) 관련 규정 개정 ① 현 체제 유지 시: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지원서 제출 후 심사를 통과하면 연임할 수 있다. ② 선거로 선출 시: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선거에 출마 후 당선되면 연임이 가능하다.
2	청소년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교통법안	-「성남시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 교통보호구역 설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확보
3	성남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쓰레기 제로화 정책」의 시행을 통한 친환경 성남시 구축 ① '나고야 시'의 「투명 자원봉투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효과적인 쓰레기 선별 수거법 확보 ②'일본 가미카스 마을'의 「waste- zero」 벤치마킹을 통한 효과적인 분리배출법 확보 ③「분리배출 매뉴얼 세분화 정책」 ④ 투명 자원 봉투 정책 시행
4	청소년 정책 예산심의권 부여	- 성남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청소년을 대표하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에게 부여 ① 성남시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② 사업부서 검토 시, 청소년 관련 정책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 청소년에게도 예산심의권을 보장해줌으로서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보장

| 추진성과 |

- 정책의제 피드백을 통한 실현 가능성 강화 및 전문적인 의제 연구 추진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9.12)

2-8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

| 개요 |

- 일　시 : 2018. 12. 21.(금) 16:00 ~ 18:00
- 장　소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학부모 및 관계자
- 인　원 : 70명(청소년 의원 17명, 학부모 및 관계자 53명)
- 내　용 : 개회식, 정책제안(조례의결, 자유발언), 폐회(소감, 논평) 등

| 세부추진내용 |

- 조례 및 정책제안

연번	소속		주요내용
1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민주시민교육TF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 - 초·중·고 청소년의 민주시민의 면모를 갖춘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제안 - 민주시민경시대회, 민주시민대백과 편찬 사업 등 초기청소년에게 조금 더 기초적이고 진입장벽이 낮은 민주시민 기본사업 제안
2		성평등 TF	「성남시 양성평등 조례」 개정 -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는 성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내포되어 있음.　이는 양성을 제외한 다른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단어이므로 '성평등'으로 고쳐 사용 할 것을 제안함. -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 제도를 고침으로써 인터섹슈얼 등 제 3의 성별에 대한 다양성을 확립
3			「성남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지식 습득 및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통한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 지원을 위해 성남시 내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제안
4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청소년 참여예산 TF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교육 분야 제안사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 및 심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 강조 · 행복의회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참여예산 중 교육·청소년 부분 제안사업 심사
5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 폭력의 범위 확장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보장 -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보장 및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강화 -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보장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확장 - 급식 환경 개선 - 소수학생의 대상 확대 및 권리 보장 등 제안
6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귀갓길안전TF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및 「성남시 안전귀갓길 조성 조례」 - 기본원칙에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과 시의회가 구조물, 건축물,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를 신설하여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을 제안함. -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로 변화할 수 있도록 LED방범등과 비상버저 설치 제안
7		Clean Seongnam TF	「성남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 투명자원봉투 시범운영, 배출일련 번호 정책, 전봇대 쓰레기통 설치 등 쓰레기 제로화 정책의 시행을 통한 친환경 성남시 구축 제안

- 투표결과 조례 제정

구분		찬성	반대	가/부
1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	12	4	가결
2	성남시 양성평등 조례 개정	7	9	부결
3	성남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1	5	가결
4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14	2	가결
5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13	3	가결
6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12	4	가결
7	성남시 안전귀갓길 조성 조례	14	2	가결

| 추진성과 |

- 의안발표, 의안투표, 조례제정 등 본회의 과정을 통한 **입법화 과정 이해 및 대의 민주주의 간접 경험**
- 청소년 의견수렴 ⇒ 자료조사 및 의제연구 ⇒ 정책제안 및 자문, 피드백 ⇒ 의제 상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청소년 정책제안 활성화 및 반영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 운영**
- 본회의 개최를 통한 행복의회에 대한 **지역사회 긍정적 인식 확산 및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들의 소속감 증대 및 자긍심 고취**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12.21.)

03 지속적인 의제연구 및 제안을 통한 정책 반영

3-1 제3대 행복의회 정책반영 사례

| 정책제안 세부내용 |

-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 편성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제안」

· 시행 배경 :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예산 편성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행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 중 몇몇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예산안 심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곳도 존재한다.

A방안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참여하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심의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성남시청(예산법무과)간 주민참여예산 업무협약 체결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청소년 부분 제안사업을 심사

B방안 - [별도의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심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권한이임을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하고 '(가칭)청소년 예산 학교'등의 교육 시행

-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제정

| 추진경과 |

2017. 8. 25.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2017. 12. 20.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2018. 5. 12.~15.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2018. 8. 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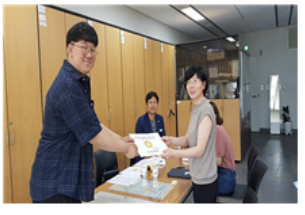

2018. 9. 1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 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2018. 10. 2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제26조 청소년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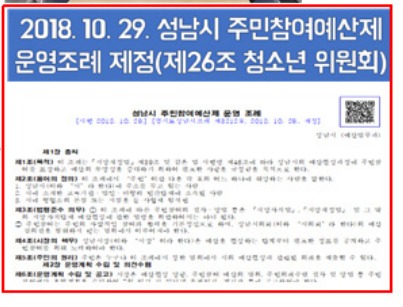

| 정책의제 13건 발굴, 정책제안 24회 추진 |

구분		주요내용
2017.8.25.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1차	성남시청 예산법무과에 성남시예산참여축제에 제안된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의 정책 제안서 전달
2017.12.20.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예산참여축제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참여하는 방안,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자유발언 진행
2018.5.12. ~15.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6.13 지방선거 성남시장 예비후보 3인(은수미, 박정오, 장영하 후보)과 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과 청소년의 참여보장,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연계 진행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 전달 및 피드백 진행
2018.8.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 제안서 전달 2차	성남시청 예산법무과에 방문해 주민참여예산의 청소년위원회 설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서 전달
2018.9.1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경희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설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방안의 정책 제안서 전달
2018.10.29.	정책반영 조례제정	성남시조례 제3212호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제26조(청소년 위원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교육 분야 제안 사업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청소년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4 워크숍 및 교류활동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대외 홍보

4-1 의제 발굴 워크숍

| 개요 |

- 기　간 : 3. 10.(토) ~ 3. 11.(일), 무박 2일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 대　상 : 제3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청년코디네이터
- 인　원 : 29명
- 내　용 : 3분 스피치(자기소개 및 1인 정책제안), 전문교육, 주제토론 등

| 세부추진내용 |

<table>
<tr><th>구분</th><th>일정</th><th>주요내용</th></tr>
<tr><td>워크숍</td><td>3/11(토)
~
12(일)</td><td>- 세부일정표
<table>
<tr><th></th><th>1일차 (3. 10. 토)</th><th>2일차 (3. 11. 일)</th></tr>
<tr><td>00:00
~ 07:00</td><td rowspan="4">위촉식 사전 리허설</td><td>자유토론</td></tr>
<tr><td>07:00
~ 08:00</td><td>세면 및 준비</td></tr>
<tr><td>08:00
~ 09:00</td><td>아침식사</td></tr>
<tr><td>09:00
~ 11:00</td><td>주제토의 발표</td></tr>
<tr><td>11:00
~ 12:00</td><td>위촉식</td><td rowspan="12">귀가</td></tr>
<tr><td>12:00
~ 13:00</td><td>의회활동 기본교육
(김유석 의장)</td></tr>
<tr><td>13:00
~ 14:00</td><td>점심식사</td></tr>
<tr><td>14:00
~14:30</td><td>이동
(성남시의회⇒중원청소년수련관)</td></tr>
<tr><td>14:30
~15:00</td><td>정리 및 휴식</td></tr>
<tr><td>15:00
~17:30</td><td>전문교육
(주제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td></tr>
<tr><td>17:30
~18:30</td><td>문화활동</td></tr>
<tr><td>18:30
~19:30</td><td>저녁식사</td></tr>
<tr><td>19:30
~ 21:30</td><td>3분 스피치
(자기소개 및 1인 정책제안)</td></tr>
<tr><td>21:30
~ 22:30</td><td>주제토의</td></tr>
<tr><td>22:30
~ 24:00</td><td>초선의원! 연임의원에게 묻다
(의회활동 Q&A)</td></tr>
</table></td></tr>
</table>

구분	일정	주요내용
		- 세부일정표

프로그램명		내용
1	의회활동 기본교육	-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활동 기본교육 진행 (지방의회의 역할 등)
2	전문교육	- 주제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 강사 : 권혜진(붙임 2. 이력서 참조) · 재단 강사료 및 수당지급 업무처리 지침의 특별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료 근거 지급 - 내용 1) 마음 열기 2) 토론방법 : 천사악마게임 3) 협상력훈련
3	문화활동	-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진행
4	3분 스피치	- 제한시간 3분 내에 간단한 자기소개와 개인 별 정책제안 연설 진행 · 신규위원 : 지원신청서 제출 시 정책제안서 기반 · 연임위원 : 평소 관심있던 정책 기반 · [붙임 1] 3분 스피치-1인 정책제안 요약 참조
5	주제토의	- 2017년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참여제안과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된 현재 이슈 주제를 바탕으로 사전 의제 배경지식을 공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토의 진행 · 주제1 [교육]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 주제2 [문화] 성 중립 교복 정책 · 주제3 [환경] 40cm 이상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 주제4 [복지] 청소년 복지정책 · 주제5 [인권] 사형제도 존폐 · 주제6 [권익] 청소년 참정권
6	초선의원! 연임의원에게묻다 (의회활동Q&A)	- 오리엔테이션, 위촉식,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궁금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질문, 그리고 앞으로 제3대 행복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세세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7	주제토의 발표	- 주제 별 토의 내용 발표 및 공유 - 주제토의를 기반으로 추후 TF팀 구성

| 추진성과 |

- 워크숍 운영으로 청소년 간 상호이해 및 의회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 - 청소년 의원의 소속감 및 연대 강화

의제발굴 워크숍(3.10.~11.)

4-2 교류 워크숍

| 개요 |

- 기　간 : 7. 21.(토) ~ 7. 22.(일), 무박 2일
- 장　소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및 중원청소년수련관
- 대　상 : 제3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등
- 인　원 : 87명(3대 행복의회 청소년의원 21명 × 2일, 고양시 청소년의회 및 차세대 23명, 양산시 청소년의회 12명, 1~2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5명 × 2일,)
- 내　용 : 교류활동, 주제토의, 요리경연대회, TF팀 별 진행사항 공유 및 피드백 등
  1) 고양시청소년의회 및 차세대위원회, 양산시청소년의회 교류활동 - 단체소개, 주제토의 등
  2) 前·現 행복의회 청소년의원 교류활동 - 요리경연대회, TF팀 진행사항 공유 및 피드백, 주제토의 등

| 세부추진내용 |

<table>
<tr><th>구분</th><th>일정</th><th>주요내용</th></tr>
<tr><td>교류
워크숍</td><td>7/ 21(토)
~
22(일)</td><td>- 세부일정표
<table>
<tr><th>시간</th><th colspan="3">1일차(7.21.토)</th><th colspan="2">2일차(7.22.일)</th></tr>
<tr><td>00:00
~08:00</td><td colspan="3" rowspan="3">사전준비</td><td>주제토의</td><td rowspan="4">재단
사무국</td></tr>
<tr><td>08:00
~ 08:30</td><td>세면 및 준비</td></tr>
<tr><td>08:30
~ 09:30</td><td>아침식사 및
토의결과발표</td></tr>
<tr><td>09:30
~11:00</td><td colspan="3">이동
(재단 사무국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td><td>귀가</td></tr>
<tr><td>11:00
~12:00</td><td rowspan="4">교류활동①</td><td>환영사
참여기구별 소개</td><td rowspan="4">일산
서구
청소년
수련관</td><td colspan="2" rowspan="9"></td></tr>
<tr><td>12:00
~13:00</td><td>점심식사</td></tr>
<tr><td rowspan="2">13:00
~15:00</td><td>그룹별
주제토의</td></tr>
<tr><td>그룹별
토의결과 발표
단체사진 촬영</td></tr>
<tr><td>15:00
~17:00</td><td colspan="3">이동
(성남시의회⇒중원청소년수련관)</td></tr>
<tr><td>17:00
~18:00</td><td colspan="2">휴식 및 셋팅</td><td>차오름실
및 연못가</td></tr>
<tr><td>18:00
~21:00</td><td rowspan="3">교류활동②</td><td>바비큐파티&
요리경연대회</td><td>연못가</td></tr>
<tr><td>21:00
~23:00</td><td>TF팀 별 진행사항
공유 및 피드백</td><td rowspan="2">재단 사무국</td></tr>
<tr><td>23:00
~24:00</td><td>주제토의</td></tr>
</table></td></tr>
</table>

구분	일정	주요내용
		- 세부일정표

프로그램명		내용
1	단체소개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 제1-2대 행복의회 활동성과 · 우수사례(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 제3대 행복의회 주요활동 · 향후계획
2	주제토의	· 조별 주제토의 · 토의결과 발표 · 세부주제 1) 청소년 의회(차세대)의 대표성 문제 및 해결방안 2) 정책제안 및 실현 과정에서 한계 및 해결방안 3) 청소년 의회(차세대)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4) 청소년 의견수렴(정책, 아이디어 등)을 위한 방안 모색
3	바비큐파티&요리 경연대회	· 前·現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구분 없이 조 편성 · 사전에 조별 요리 선정 및 재료 준비 · 조별 요리 후 심사위원의 요리 평가 진행 · 참가 청소년 의원 소개 등 세부 프로그램 진행
4	TF팀 별 진행사항 공유 및 피드백	· TF팀 별 진행사항 발표 · 前·現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등 피드백 진행
5	주제토의	· 전체토의 · 세부주제 : 행복의회의 미래와 발전방안

| 추진성과 |

- 고양시청소년의회·차세대위원회, 양산시청소년의회와의 교류 활동의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활동의 긍정적 동기부여
- 의정운영 중간 점검 및 의회 활성화 촉진
- 교류활동 실시에 따른 대·내외 인지도 향상

교류워크숍 (7.21.~22)

4-3 교류 활동

| 개요 |

- 일　시 : 10. 27.(토) 09:30~13:00
- 장　소 : 재단 사무국 차오름실
- 대　상 : 제3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전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
- 인　원 : 26명
- 내　용 : 환영사, 참여기구별 소개, 그룹별 주제토의 등

| 세부추진내용 |

<table>
<tr><th>구분</th><th>일시</th><th>주요내용</th></tr>
<tr><td>교류
활동</td><td>10/27(토)</td><td>
- 세부일정표
<table>
<tr><th colspan="2">시간</th><th rowspan="2">소요시간
(분)</th><th rowspan="2">내용</th><th rowspan="2"></th></tr>
<tr><th>부터</th><th>까지</th></tr>
<tr><td>09:30</td><td>10:00</td><td>30</td><td>환영사
참여기구별 소개</td><td>차오름실</td></tr>
<tr><td>10:00</td><td>11:30</td><td>90</td><td>그룹별 주제토의</td><td>라온실
가온실
차오름실</td></tr>
<tr><td>11:30</td><td>12:00</td><td>30</td><td>토의결과 발표</td><td>차오름실</td></tr>
<tr><td>12:00</td><td>12:05</td><td>5</td><td>단체사진 촬영</td><td>차오름실</td></tr>
<tr><td>12:05</td><td>13:00</td><td>55</td><td>점심식사</td><td></td></tr>
</table>
- 세부내용
<table>
<tr><th colspan="2">프로그램명</th><th>내용</th></tr>
<tr><td>1</td><td>참여기구별
소개</td><td>·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 제1-2대 행복의회 활동성과
· 우수사례(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 제3대 행복의회 주요활동
· 향후계획</td></tr>
<tr><td>2</td><td>주제토의</td><td>· 조별 주제토의
· 토의결과 발표
· 세부주제
1) 청소년 참정권 보장
2) 인권보장(학생, 성차별, 성소수자,페미니즘,미투운동 등)
3) 소년법 개정</td></tr>
</table>
</td></tr>
</table>

| 추진성과 |

전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와 교류 활동으로, 활동내용 공유 및 공통 주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교류활동(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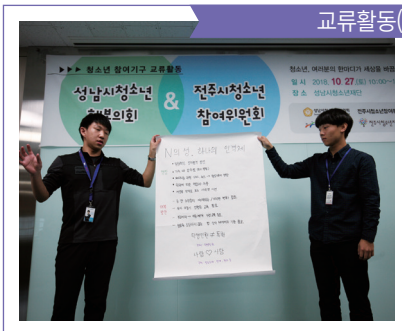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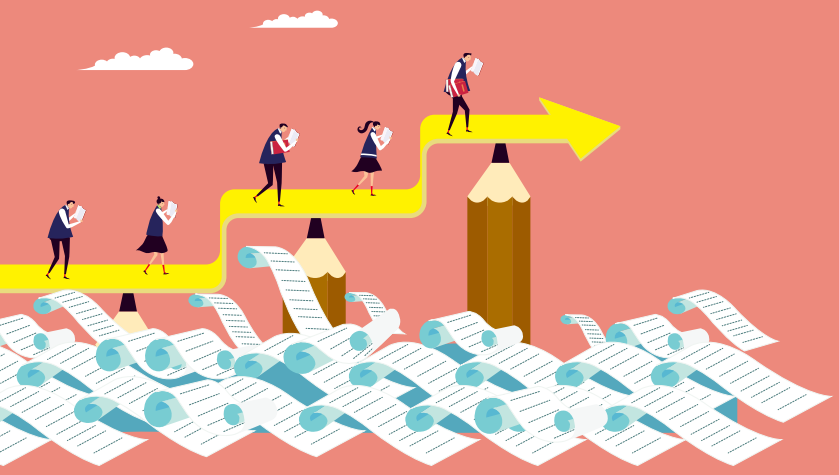

조례제안

의안발의 01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

민주시민교육 TF팀 / 교육문화상임위원회

01 문제인식

대한민국은 탄핵정국을 겪었다. 촛불집회 등의 탄핵 시위가 계속되었고 시위에 주도, 참여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청소년이었다. 청소년들의 깨어있고 주체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었고 청소년 참정권 반대 측의 핵심 논거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부족이었다.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있지만 정책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지만 교육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실제로는 이수시간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걸 알 수 있다.

02 현황조사

| 2-1. 현황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 배부한 민주시민 3종 교과서중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의 사용실태 및 경기도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내 중고생 301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민주시민조례 현황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귀하는 현재 몇 학년 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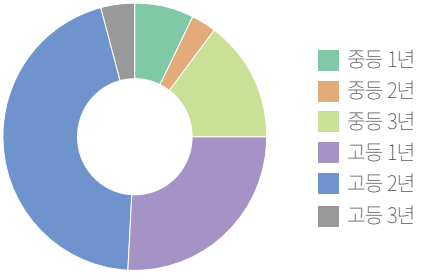

중등 1년	23	7%
중등 2년	10	3%
중등 3년	45	14%
고등 1년	77	25%
고등 2년	131	43%
고등 3년	15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포함되는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2] 학교 수업시간에 위 교과서로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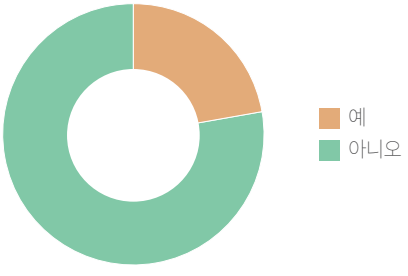

예	68	22%
아니오	233	77%

민주시민교과서 3종이 학교민주시민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제작 배부된 것으로 파악하였고, 먼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의 경우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답변이 전체 301명 중 233명이 "아니오"로 답변하여 대다수의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교과서 자체가 수업용 교본보다는 비치형 책자의 느낌이 강해서인지 초판인쇄 이후 학교에 더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표3] 위 교과서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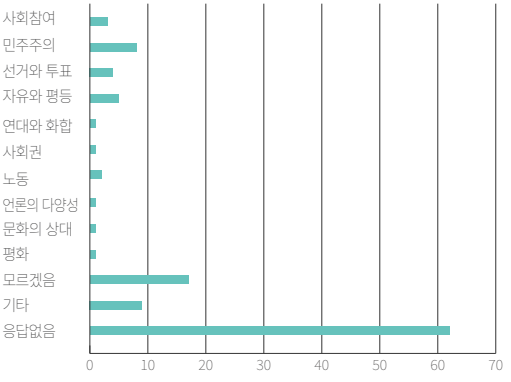

사회참여	12	3%
민주주의	25	8%
선거와 투표	13	4%
자유와 평등	16	5%
연대와 화합	4	1%
사회권	5	1%
노동	8	2%
언론의 다양성	4	1%
문화의 상대	6	1%
평화	4	1%
모르겠음	52	17%
기타	30	9%
응답없음	187	62%

3번 응답 중 '응답 없음' 항목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모르겠음' 항목이 전체 301명 중 187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수업을 통해 경험한 요소들은 전체 답변 중 127명만이 의미 있는 요소들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실제 편찬 의도와는 다르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가 실용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표4]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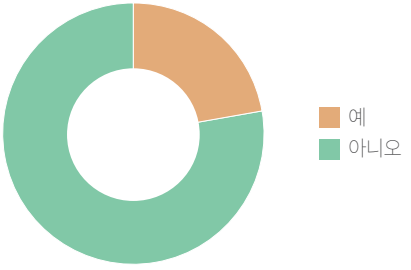

예	236	78%
아니오	65	21%

교과서의 활용률이나 실용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4번 질문에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전체 301명 중 236명이 '예'로 답한 것은 교과서의 실용성이나 수업활용도를 떠나 학생들 자체의 민주시민의식이 상당 수준 고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더욱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고시켜야 한다.

03 정책

| 3-1. 제안내용 |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조례」 신설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조례」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명시하는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의 세부화와 접근성확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필요성 등을 재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 3-2. 실행 계획 |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성남시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성남시 청소년의 민주시민적 역량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소재한 학교 혹은 센터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성남시 청소년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성남시 청소년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성남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국적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서도 베풀어질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내 학생에게 뿐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청소년기 동안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남시 청소년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기본사업) 시장은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성남시민주시민교육센터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 현 교육 실태 조사
4. 민주시민교육 및 강사 양성
5.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홍보
6.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 및 행사 주최

제6조(성남시민주시민교육센터)

① 시장은 제5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시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민주시민교육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성남시청소년의 모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성인으로 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과 성인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재위촉 등 사유 발생 시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시행계획)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의 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관리에 따른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4 기대효과

- 민주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자세를 배울 수 있다.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확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
- 청소년이 참정권을 가졌을 때 사회참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청소년이 투표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민주의식을 배울 수 있다.
- 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
-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의무를 다할 수 있다.
-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으로 성남시내 모든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의안발의 02

성남시 양성평등 조례 개정

성평등 TF팀 / 교육문화상임위원회

01 문제인식

현대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외의 성별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이다. 언뜻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여전히 '양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멈춰있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사회에는 성별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만 분류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은 다양한 이름표 집단에 소속되거나 또는 소속되지 않는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는 성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양성을 제외한 다른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단어이므로 '성평등'으로 고쳐 사용해야 한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회에 만연해있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변화를 줘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02 현황조사

| 2-1. 현황 |

[전체인구 중 간성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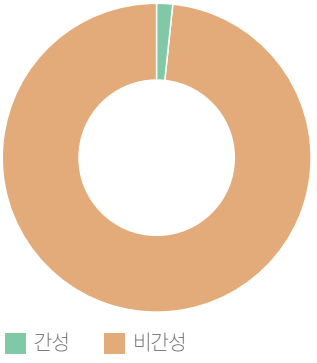

⇨ 간성(Intersex)이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성장하면서 신체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의 성별을 표현하는 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초여성, 초남성, 터너증, 클라인펠터증, 진성 반음양 등이 있다.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1.7%가 간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00명 중 약 2명으로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간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성남시 중/고등학교 재학생 7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세상에 몇가지 성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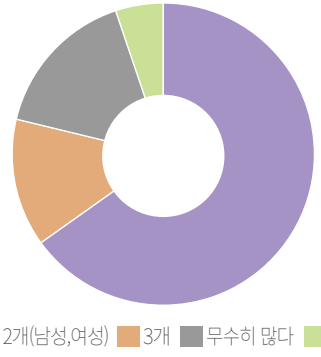

간성에 대해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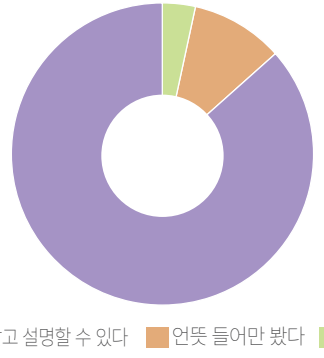

⇨ 이렇듯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성별 이분법적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간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사례 |

① 女도 男도 아닌 '제3의 성' 표기 움직임 확산

세계 각국에서 출생신고서에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 표기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질랜드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제일당의 트레이시 마틴 내무장관이 출생신고서 성별 표기란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도 '간성'(intersex) 또는 '불특정'(X) 표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성별을 바꾸는 일도 더 쉬워진다. 즉 자유의사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의 성'이라고도 불리는 간성이란 남성과 여성의 신체 및 유전적 특징을 모두 갖고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 UN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7%, 즉 1000명당 17명은 간성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영유아 시절 부모에 의해 수술을 받아 인위적으로 한쪽 성별을 택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정체성 혼란 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출생신고서에 간성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은 차별적이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사이의'(inter)나 '다양한'(various) 등 여성과 남성 이외의 성을 표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미국 법원,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 첫 인정 법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의 사람이 탄생했다. 미국 오리건주 지방법원이 최근 한 시민이 낸 청원을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무성'(無性·agender)을 법적 성별로 인정했다고 <엔비시>(NBC)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방송은 이 판결을 가리켜 "역사가 조용히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남녀로만 구별되지 않는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디딤돌이 놓인 셈이다.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의 에이미 홈스 헨 판사는 지난 10일 '성명 및 성별 판정' 재심에서 패치(27)라는 이름의 비디오게임 디자이너에게 '무성'을 부여했다. 패치라는 이름도 원래의 성과 이름을 무효로 하고 성명 구별 없는 이름만 새로 만든 것이다. '무성'은 남성 혹은 여성 어느 쪽에서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유전적으로 동시에 지닌 '간성'(inter sex)이나 '양성'(binary sex),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등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패치는 <엔비시> 인터뷰에서 "6살 즈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말들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10대가 되면서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을 배웠지만 난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 법률 사무소인 '실비아 리베라 법률 프로젝트'의 카일 라피냔 변호사는 "법원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다른 정부 기관들도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비아 리베라 법률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에게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2002년 뉴욕에 설립된 시민단체로, 트랜스젠더이자 1960년대 미국 인권활동가였던 실비아 리베라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번에 '무성' 판결을 내린 에이미 홈스 헨 판사는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성전환 여성의 청원을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논바이너리'(non-binary)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한 바 있다. 전통적인 남녀 '양성' 구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위 기사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무성, 간성 등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성'이 아닌 '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03 정책

|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며 모든 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그 문화 확산	제6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 목표 2. 성평등 정책의 추진방향 가. 성평등의 촉진 및 그 문화 확산

나.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제8조(양성평등 시정참여)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양성평등 교육 등)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관련 행사, 교육, 문화 사업
2.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나. 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제8조(성평등 시정참여)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모든 성별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모든 성별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평등 교육 등)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성평등 참여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평등 관련 행사, 교육, 문화 사업
2.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0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양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36조에서 정한 성남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및 제44조에서 정한 성남시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36조에서 정한 성남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44조에서 정한 성남시 양성평등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사·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모든 성별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모든 성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특정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20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모든 성별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성별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36조에서 정한 성남시 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및 제44조에서 정한 성남시 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모든 성별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모든 성별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36조에서 정한 성남시 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44조에서 정한 성남시 성평등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사·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에게 모든 성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족여성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원
2. 양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3.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양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성관련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5.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에서 사용한다.

제3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성남시 양성평등상

제42조(성남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에 공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족여성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원
2. 성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3.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4장 성평등기금

제3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모든 성별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별관련 사업에 사용한다.

1. 모든 성별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5.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에서 사용한다.

제3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성평등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성평등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성남시 성평등상

제42조(성남시 성평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평등에 공헌

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성남시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	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성남시 성평등상을 시상한다.
제43조(수상 대상자)	제43조(수상 대상자)
① 양성평등상의 수상 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선정한다.	① 성평등상의 수상 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양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② 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4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4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수상 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45조(수상 대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등)	제45조(수상 대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등)
① 수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① 수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각 부문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수상대상자는 각 부문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성평등상은 매년 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세부사항)	제46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양성평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성평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벤치마킹 |

⇨ 양성평등->성평등으로 용어 변경

⇨ 양성->모든 성으로 용어 변경 및 간성 명시

04 기대효과

⇨ 이분법적 사고방식 변화

-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터섹슈얼 등의 제 3 성별에 대한 다양성을 확립할 수 있다.

⇨ 제 3 성별 인권 보장

- 간성으로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결정을 통해 남성 혹은 여성 중 한 가지 성별로 결정되어 수술을 받거나 본인이 간성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다 2차 성징 시기가 되자 혼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간성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입지를 다져 후에 아이들이 사고방식을 확립한 후 본인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성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숙한 사회로 발전

- 남성과 여성 뿐만 아니라 모든 성별과 젠더를 포용함으로써 올바른 성 인식과 함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 성소수자의 사회적 불편 감소

-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제 3 성별의 입지를 다짐으로써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겪어야했던 사회적 불편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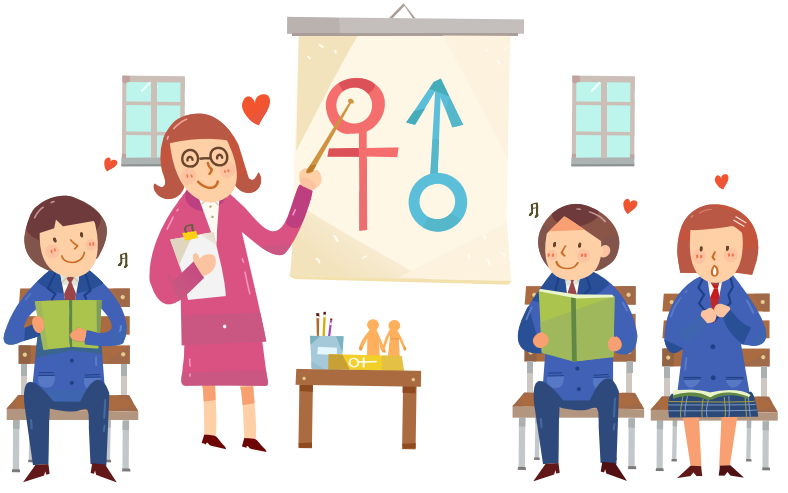

의안발의 03

성남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평등 TF팀 / 교육문화상임위원회

01 문제인식

| 시중도서 성교육의 문제점 |

서점 아동코너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성교육 도서에 성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 여성의 옷차림 때문이다, 남성은 성적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 등 이 내용 모두가 청소년들이 읽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중략

어떤 책에서는 동성애가 자연의 윤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한 책도 있고,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백 배 이상이라거나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여자들보다 충동적이라는 내용들도 있다.

이런 성교육 책들은 대부분 동화 작가나 만화가들이 썼는데, 성교육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아 생긴 문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교육 도서와 관련한 별도의 출판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 교육부에서 학교에 나눠준 성교육 자료의 문제점 |

"남성은 돈, 여성은 몸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원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을 '데이트 비용' 문제에서 찾는 이 황당한 주장은 교육부가 만들어 3월에 일선 학교에 나눠준 성교육 자료의 한 대목이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겠다며 정부가 올해 처음 만든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를 둔 '교사용 성교육 자료'이지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하는 등 퇴행적인 지침(▷ 관련기사 : "성교육 때 동성애 언급말라"…교육부 지침 논란)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이어 성폭력과 성역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 |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교육 시간의 부족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의무 시간은 연간 15시간에 그친다.

둘째, 실질적 성교육이 아닌 성폭력 예방 교육에 멈춰있다.

셋째,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있다.

넷째, 학생들의 연령과 신체 발달 상태와 맞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은 비현실적이고 수준에 맞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으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교육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학교에만 성교육을 맡겨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섯째, 성교육 자료에 문제가 있다.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며 거절의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거절 의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떠나라고 조언한다. 다른 중학교 지도서에는 성적 의사 결정의 책무성이 약할 때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직 일방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성을 나누거나,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이다.' 라는 식으로 교육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보는 책은 성교육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재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성교육을 해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02 현황조사

| 2-1. 현황 |

[청소년 대상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남시 중/고등학교 재학생 7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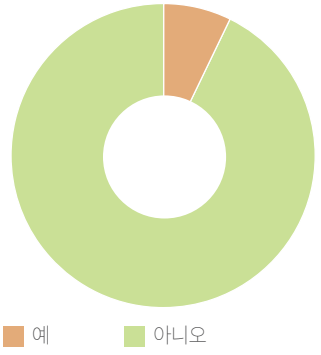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그 연령과 신체적 성장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성교육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다. 부모는 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을뿐더러 교육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문화센터의 건립과 전문성을 가진 지도사,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안양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등에는 성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성남시에는 현재 성문화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기에 전문적인 성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도 물론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교육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뻔한 것일뿐더러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현재 성남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이고 활성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 단순하고 뻔한 성교육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으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

| 2-2. 사례 |

전국에는 58개, 경기도 내에는 9개의 성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위치	운영 프로그램	사진
경기도청소년 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경기도 안산시	- 체험관 성교육 - 찾아가는 성교육 - 테마가 있는 성교육 - 청소년동아리 운영 - 부모 및 교사교육 - 네트워크 구축	
용인시청소년 성문화센터	경기도 용인시	- 체험관 성교육 - 찾아가는 성교육 - 성폭력 예방 인형극 - 특별 프로그램 - 상담활동 - 네트워크 사업	

수원시청소년 성문화센터	경기도 수원시	- 체험관 성교육 - 찾아가는 성교육 - 청소년 동아리 운영 - 역량강화 사업 - 네트워크 구축	
화성시청소년 성문화센터	경기도 화성시	- 체험관 성교육 - 동아리 운영 - 찾아가는 성교육 - 네트워크 구축	
경기북부청소년 성문화센터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경기도 파주시	- 딸콩달콩 성교육체험관 - 큰키나무 이동형 성교육버스 - 찾아가는 성교육 - 성인대상 성교육 - 성 인권교육 - 가족 성교육 - 장애인 성교육 - 우선교육대상자 성교육 - 문화활동	
부천시청소년 성문화센터	경기도 부천시	- 체험관 - 찾아가는 성교육 - 문화사업	
안양시청소년 성문화센터	경기도 안양시	- WHY버스체험교육 - 찾아가는 성교육	

|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503호, 2015.10.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하여 용인시에 설치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상현동 1129-2)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별·대상별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장 운영
2. 성인지적(양성평등 포함) 통합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3.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별표 1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낸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분야의 해당 전문가로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4. 제4조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센터에 지원된 운영비와 이용료는 센터의 관리·운영과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 되면 운영경비를 정산한 집행 잔액과 시설·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 운영된 것으로 본다.

04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 |

성남시에 성문화센터를 설립한다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던 성교육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젠더 의식을 함양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이고 올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은 서로의 차이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세부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 |

성문화센터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먼저 그 누구보다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올바른 성 의식을 함양시켜 아이가 올바른 성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성 상담을 통해서는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민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학생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피임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을 가르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젠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문화센터 설립은 **불안전한 성 지식으로 위태로운 청소년들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므로 성남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의안발의 04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청소년 참여예산 TF팀 / 인권권익상임위원회

01 문제인식

| 지방재정법 제 39조 |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수렴과 그 절차와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예산 편성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선행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 중 몇몇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예산안 심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곳도 존재한다.

▪ 현재 성남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청소년 위원회 또한 구성되지 않았다.)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70호, 2017.3.29., 일부개정]

경기도 성남시(교육청소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29.>

▪ 청소년기본법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

▪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한계

지난 10월 29일 제정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에는 '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만으로는 청소년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본 조례를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02 현황조사

| 2-1. 추진경과 |

구분		내용	사진
2017. 8. 25.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1차	성남시청 예산법무과에 성남시예산참여축제에 제안된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의 정책 제안서 전달	
2017. 12. 20.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예산참여축제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참여하는 방안,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자유발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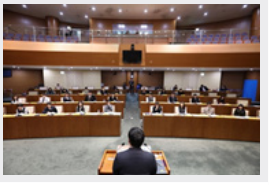

2018. 5. 12. ~ 15.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 제안서 전달	6.13 지방선거 성남시장 예비후보 3인(은수미, 박정오, 장영하 후보)과 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과 청소년의 참여보장,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연계 진행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 전달 및 피드백 진행	
2018. 8. 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2차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예산참여축제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참여하는 방안,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자유발언 진행	
2018. 9. 1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경희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설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방안의 정책 제안서 전달	
2018. 10. 29.	정책반영 조례제정	성남시조례 제3212호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2. 사례 |

1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8월 오후 5시 금천구의회에서 청소년의원들이 금천구의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을 직접 심의·의결한다.

구는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안한 교육 및 청소년 사업을 금천구청소년총선거를 통해서 뽑힌 청소년의원이 직접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심의는 주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교육·청소년분야 사업 총 43건, 13억3000만원이다.

▲ 금천구청소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시아경제, 박종일기자)

2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다음 달 4일까지 '2019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2016년부터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를 시행중이다. 올해 편성 예산은 모두 1억원이다.

제안된 사업은 구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후 청소년참여기구가 다시 심사한다. 이어 모바일 투표, 청소년참여기구 위원 총회 투표, 청소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 강동구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헤럴드경제, 이원율기자)

3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는 미래의 시흥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시흥시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헤럴드경제, 박준환기자)

4

6. 미래세대 시정 참여기회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市 주관)

○ 운영방침
- 청소년 지원예산 및 청소년의 시각에서 참여하는 정책 제안
- 소외계층 및 제도권 밖 청소년들의 시정 참여기회 보장
- 청소년 눈높이 예산학교 운영 및 위원 역량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 구 성 : 40명 이내
- 수원시 거주 청소년(중 · 고등학생 연령에 준하는 자)

○ 주요활동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청소년 예산제안 의견수렴 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및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 청소년 제안사업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 조정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2018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03 정책

| 3-1. 제안내용 |

- 청소년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보장에 대한 의무 강조
- 청소년 위원회 구성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연계방안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성남시청(예산법무과)간 주민참여예산 업무협약 체결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청소년 부분 제안사업을 심사

| 3-2. 실행계획 |

-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26조(청소년 위원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교육 분야 제안 사업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청소년 위원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교육 분야 제안 사업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한다. ② 청소년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청소년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청소년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4 기대효과

| 주민참여예산제의 청소년 참여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

-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조례의 제 26조가 유명 무실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재정 및 인프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제고 |

- 청소년들이 본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책임의식과 참여 정신이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정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직접 참여하며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연구진: 좋은 변화가 생겼네요. 민혁이는요?
>
> 민혁: 저도 앞서 지호가 말했듯이 제가 시설물을 봤을 때 저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예산위원회를 하면서 저런 것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그래서 저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비판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할까? 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 청소년 참여예산제 참여자 대상 FG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민종)

| 청소년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 친구들과 토론하며 사회적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올바른 시민의식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 시민의 일원인 청소년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자치적인 사회참여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연구진: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
> 지수: 그러니까 뭔가 청소년하면 제한된 게 많은 데. 청소년은 공부고 어른들은 일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대학교가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취업해서 잘 사는 게 목표인데. 작게 보면 대학이 목표인데 그 뒤에 일이 더 많잖아요. 청소년인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모여서 토의하고 이런 게 주입식 교육이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공부만 하고 이런 느낌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공부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바라보는 시각도 열렸고. 그랬는데, '우리도 아산시의 주민 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는 학생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긴 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만 정책을 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하면서 청소년들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 청소년 참여예산제 참여자 대상 FG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민종)

| 청소년의 존재에 대한 인식 변화 |

- 청소년 스스로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연구진: 지수가 첫 해 참여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뭐야?
>
> 지수: 저는 정책이 진짜로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거 같아요. 이렇게 제가 문의하게 될 기회도 없고 아산시 주민이 이런 거 참여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 청소년 참여예산제 참여자 대상 FG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민종)

>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청소년이 구정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청소년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더해졌다"며 "앞으로 금천구청소년의회가 우리 구 청소년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

▲ 금천구청소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인해 의원(금천고 2학년)이 아시아경제를 통해 밝힌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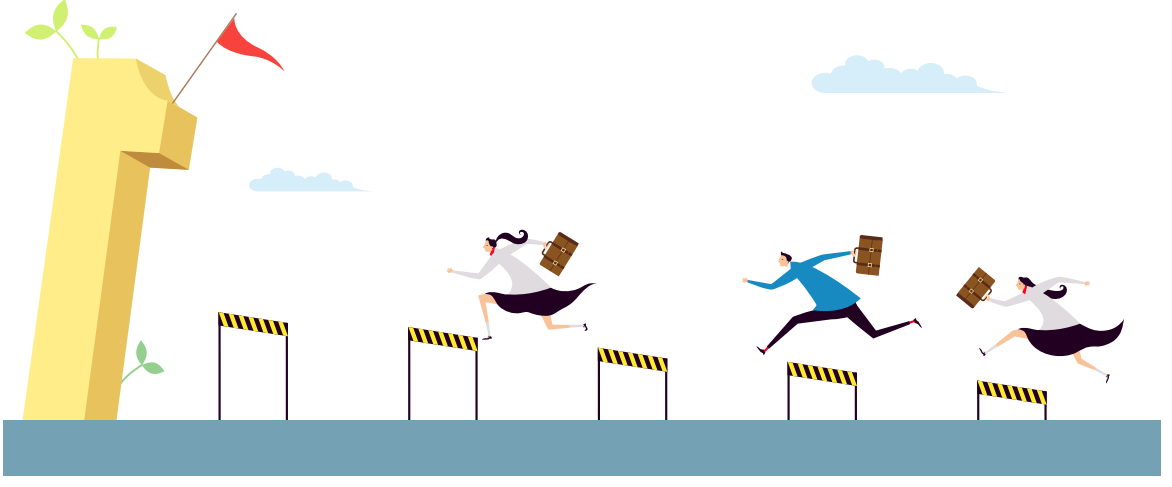

의안발의 05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인권권익상임위원회

01 문제인식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의 대부분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 주체들 사이의 상호 충돌과 갈등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도외시 되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이를 적용, 실시하기에 이르게 되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준비과정부터 적용, 실시되고 있는 현재까지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성남시 청소년들의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02 현황조사

| 성남시 학생 인권 실태조사 |

1) 출처 및 분석방법

주요요소	내용
조사대상	성남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3명
표본수	123명
조사방법	서면으로 된 설문조사지
조사시기	2017년 7월 ~ 8월 (두 달간)
조사내용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이행 여부 - 학생인권 보장 실태

2) 조사결과

질문 | 본인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아십니까?
답변 | 예(13%), 아니오(87%)

질문 | 본인은 교내에서 자신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예(13%), 아니오(87%)

질문 | 본인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답변 | 파마(54%), 염색(28%), 스프레이(13%), 기타(5%)

질문 | 본인의 학교에서는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까?
답변 | 예(100%), 아니오(0%)

질문 ❙ 본인은 교내의 다양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답변 ❙ 예(86%), 아니오(14%)

질문 ❙ 다양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교내의 정책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 수학여행 장소 결정(34%), 체험학습 장소 결정(50%), 교육과정(12%), 기타(4%)

질문 ❙ 본인은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답변 ❙ 예(77%), 아니오(23%)

질문 ❙ 본인은 교내생활 중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답변 ❙ 예(42%), 아니오(58%)

질문 ❙ 본인은 학교운영지원비 및 급식비가 투명하게 활용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예(37%). 아니오(63%)

질문 ❙ 본인의 학교는 보건실, 탈의실, 화장실, 교실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습니까?
답변 ❙ 예(37%), 아니오(63%)

질문 ❙ 학교에서는 생리중인 여학생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 예(85%), 아니오(15%)

질문 ❙ 학교에서는 동아리나 학생회 구성에 성적 제한을 두지 않는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변 ❙ 예(45%), 아니오(55%)

질문 ❙ 학교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한 규정개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답변 ❙ 예(11%), 아니오(89%)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홍보 필요**

- 2017년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에서 조사한 '본인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성남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87%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알지 못 한다'는 응답을 보여, '알고 있다' 13%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경기도 내 학생의 인권 보장 필요**

- 2017년도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에서 조사한 '본인은 교내에서 자신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성남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87%가 '자신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보장되고 있다'는 13%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03 정책

① 폭력의 범위 확장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보장
-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에서 정신적 폭력까지 폭력의 범위 확장
-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담임교사 추천권한 등 여러 권한으로 학생 억압 방지

②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보장 및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강화
- 학생들이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실재했던 전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난 시 매뉴얼 작성과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눈과 비가 내리는 날, 미세먼지주의보, 폭염주의보, 한파주의보 등이 발령된 날에는 학생의 실외 활동 자제를 통한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보장

③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보장
- 학교에서 동물실험(물고기 해부실험 등)과 같이 가치관에 반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수업 과정 혹은 평가에 반영하거나 참여를 강요하지 않으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④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확장
- 학교 의사 결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⑤ 급식 환경 개선
- 알레르기 보유 여부 및 특정 식재료에 대한 섭취여부 매년 조사 실시
- 알레르기 보유학생, 채식주의자인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급식 정책 시행
- 학교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식에 대한 관리, 감독할 의무 강화

⑥ 소수학생의 대상 확대 및 권리 보장
-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채식주의자 등 소수학생의 범위 확장
-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명시함.
- 인권교육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경기도조례 제4853호, 2015.2.27., 타법개정] |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간의 권한의 편중으로 인한 구조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해야한다. (신설) ⑤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담임교사 추천권 등의 여러 권한으로 학생을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 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지 않을 권리,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지닌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 을 때, 학교의 장은 휴교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④ 학교는 재난에 대비한 대피훈련과 안내 방송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친구를 고발하도록 강요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는 동물실험 등 학생의 가치관에 반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수업과정 혹은 평가에 반영 하여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에 불참했을 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생은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눈과 비가 내리는 날, 미세먼지주의보, 폭염주의보, 한파주의보 등이 발령 된 날에는 학생의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신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 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 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보유 여부 및 특정 식재료에 대한 섭취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알레르기 보유 학생·채식주의자인 학생 등이 급식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⑥ 학교는 급식, 교내 매점 등 학교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식을 유통기한이 준수된 안전한 식품 으로 구성해야 하며, 학교는 학교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식에 대해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닌다. (신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생리현상에 따른 활동에 대한 자유를 가지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교사는 수업시간 등을 근거로 학생의 화장실 출입을 규제할 수 없다. (신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는 징계 이외에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설) ⑤ 징계의 근거가 되는 학내규정은 반드시 학생 자치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⑥ 교사는 징계 및 그 절차에 대한 수단으로 학생에게 협박해선 아니 된다. (신설)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 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 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 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채식주의자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 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 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 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활동에 대한 정당한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 주민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04 기대효과

1) 경기도 학생이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성을 나타낸다.
2) 교사와 학생간의 중간 타협점을 찾고 그로 인해 서로를 존중해주는 계기가 된다.
3) 경기도 내 학생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인권의 주체가 아닌 억압과 통제의 대상인 학생들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권리의 기반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일관된 인권보장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객관적인 지침이 된다.
5)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닌 협력적·공동체적 관계를 맺으며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6)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며 이상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7) 경기도 청소년들을 올바른 인권의식과 사람(특히 소수자)을 존중하는 올바른 의식을 갖춘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

의안발의 06~07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및 성남시 안전귀갓길 조성 조례

귀갓길 안전 TF팀 / 환경복지상임위원회

01 문제인식

| 귀갓길 초등생 납치 유괴범 3명 검거 (출처 : 연합뉴스) |

경남 진해경찰서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 유인)로 최모(25.무직)씨와 백모(25.대학생)씨, 김모(25.무직)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최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6시40분께 진해시 용원동 모 태권도 체육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A(9.초등교 2년) 군을 승용차로 납치한 뒤 20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통신수사를 통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부산 사하경찰서 및 강서경찰서와 공조해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새마을금고 공중전화부스와 강서구 대저1동 등구마을 뒷길에서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몰던 차량 뒷좌석에 결박상태에 있던 A군을 무사히 구출했다.

⇨ 이처럼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신호등이 없는 길을 건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거나 고장 나 있는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물며 내 뒤에 누군가가 걸어오고만 있어도 날 쫓아오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며 오기도 한다. 실제로 야간자습이 끝나고 귀가하는 여학생을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현재 귀갓길 실태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함을 알 수 있다. ("MBN 신문기사, 야간자습 귀가 여학생 옥상 끌고 가 성폭행…징역 13년") 또한 위의 기사를 보면 초등생 유괴가 귀갓길 도중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생을 승용차로 납치해 결박했고 구출한 뒤에도 이 아이의 정신적 외상은 심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와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귀갓길 도중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 귀갓길 실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심야 시간에 귀갓길에 오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나 유괴와 같은 귀갓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밝은 귀갓길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귀갓길 초등생 납치 유괴범 3명 검거 (출처 : 연합뉴스) |

생략 보행자 교통사고 특성 및 원인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 가량이 보행자 사고이며 이중 보행자 사망사고의 68%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다. 또 시간대를 보면 오후 8시~오전 1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이 1.8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야간 보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하 생략

⇨ 이처럼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한데, 어두운 주변 환경 탓에 더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오후 8시부터 오전 12시경, 즉 많은 사람들이 귀갓길에 오르는 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야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밤길이 어두워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무단횡단을 할 경우 멀리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 때문이다. 즉, 어두운 귀갓길이 야간 교통사고의 주원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귀갓길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는 가로등의 밝기도 약해 그다지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밝고 안전한 귀갓길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

02 현황조사

| 2-1. 현황 |

▪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심 귀갓길 서비스'의 실효성 미약 (참고 : 경인일보)

1)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 의정부시·고양시 등 도내 8개 시 21개 마을버스 노선을 오후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로 지정, 예산 2천900여만원을 들여 26개소의 임시정류소를 만들었다.
- 지난 6월까지 평일 하루 평균 10여명만이 이를 이용했고, 현재는 이마저도 이용되지 않아 일부 노선은 운행시간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2)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 승객이 '택시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를 실행하고 휴대전화를 NFC태그에 대면 보호자에게 택시위치와 번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 시행한 지 1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택시 승객 중 상당수가 아직도 이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활용 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
-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60건 정도만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현재는 이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 현재 혼자 귀가를 하는 청소년들이나 여성 등 많은 시민들이 성범죄 등 여러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귀갓길 안전 서비스가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심 귀갓길 서비스'의 실효성 미약 (참고 : 경인일보)

1)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 의정부시·고양시 등 도내 8개 시 21개 마을버스 노선을 오후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로 지정, 예산 2천900여만원을 들여 26개소의 임시정류소를 만들었다.
- 지난 6월까지 평일 하루 평균 10여명만이 이를 이용했고, 현재는 이마저도 이용되지 않아 일부 노선은 운행시간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2)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 승객이 '택시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를 실행하고 휴대전화를 NFC태그에 대면 보호자에게 택시위치와 번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 시행한 지 1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택시 승객 중 상당수가 아직도 이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활용 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
-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60건 정도만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현재는 이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 현재 혼자 귀가를 하는 청소년들이나 여성 등 많은 시민들이 성범죄 등 여러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귀갓길 안전 서비스가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 새벽 귀갓길 여고생 성추행하려던 뮤지컬 배우 집유 (출처 : 머니투데이)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귀가중인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 이처럼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성폭행, 납치, 유괴 등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디자인 조례 개정과 LED방범등·비상버저 설치 조례 신설은 이러한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본바탕을 마련해준다.

▪ 귀가 시간대 교통사고 빈번

□ 어두운 주변 환경 탓에 더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오후 6시~10시 경, 즉 많은 사람들이 귀갓길에 오르는 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2017년도 시간대별 교통사고 · 사고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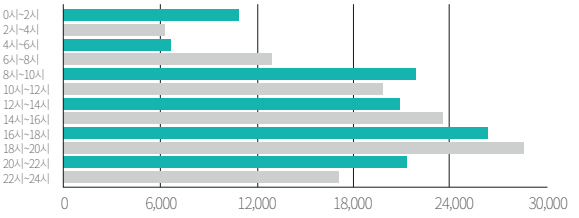

| 2-2. 사례 |

| 1. 국내 대표사례 |

1

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시작된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 시행 1년 후 전년 대비 5대 범죄 발생률이 2.91%, 절도 발생률은 7.48% 감소했다. 특히 우범지대였던 염리동의 `소금길`에서는 강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 외에 주민의 심리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 시행 5개월 후 염리동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과 가족에서 각각 9.1%, 13.6% 줄었다. 아울러 동네에 대한 애착은 13.8% 늘었고, 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는 83.3%에 달했다. (출처: MK News "음침한 골목에 비상벨·안내판…범죄 `뚝`")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후 일정 기간 동안 절도사건이 단 한 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살인이나 강도, 폭력, 강간, 강제추행은 한 건도 없었다. 이 지역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50여 가구의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해 절도범이 타고 오르면 몸에 그 흔적이 남아 경찰이 추적하기 쉽도록 했다. 그리고 CCTV를 확대하고 경찰서 직통연결 비상벨 등을 골목길 곳곳에 설치했다. 이 같은 변화가 범죄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타 자치구보다 범죄안전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만족도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2. 해외 대표사례 |

2

1970년대부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시행 후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배 이상 줄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 예로 미국 뉴욕에서는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당시 뉴욕 시장이 뉴욕의 그래피티를 상당수 지움으로서 엄청난 범죄 예방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영국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 시행 이후 주민의 불안감과 범죄가 25~50% 감소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호주에선 잦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디자인 개선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50% 이상 줄였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은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경찰관이 참여하여 건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 3. 타 시군구의 벤치마킹을 통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

3

현재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의 몇 조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해당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더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더 명확하고

확실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이용하여 더욱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타 시군구의 조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에 해당내용을 추가하였다.

-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cf.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제6조(적용범위)/제7조(디자인 추진사업)/제8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cf. 제4조(구민의 권리)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cf. 제5조(계획의 수립 · 시행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cf. 제2조(정의)/제3조(설치장소 등)/제4조(설치기준)/제5조(예산 확보)

03 정책

| 3-1. 제안내용 |

①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여 기본원칙에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과 시의회가 구조물, 건축물,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를 신설하여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②'성남시 안전귀갓길 조성 조례'의 신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으로 정의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범죄학, 심리학, 건축학, 도시학 등 여러 학문 간 연계를 통해 정립된 이론 또는 학문으로 종합적인 범죄예방 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계획과 디자인, 정책, 보안 측면이 함께 조화를 이룬 종합컨설팅의 특징이 있다. 어둡거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비상버저 등을 설치한다.

□ LED방범등 :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대체수단이다. 일반적인 전구보다 더 밝으므로 보다 밝은 골목길을 조성함으로써 범죄발생률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전력이 낮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작동시킬 시간대를 정해서 적절한 시간에만 작동시킴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cf) 경북에서는 설치 후 5대 범죄율이 14.6% 감소했으며, 미국 뉴욕에서는 설치 후 1933년부터 1997년 사이 범죄발생건수가 41% 줄었다.

□ 비상버저 :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노란색 바탕의 붉은색 버저이다. 그리고 경찰관이 골목길 각 부분을 나누어 전담함으로써 비상버저를 누르면 관제센터와 연락이 가능하고, 그 부분을 담당한 해당 경찰관에 바로 연락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찰관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범죄자의 빠른 검거가 가능하다.

LED 방범등, 비상버저, 경광등의 모습

| 3-1. 제안내용 |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심리와 함께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밝은 분위기를 만든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심리적 안정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만약, 건축물이 부식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시청은 이를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단, 인증은 타단체에 위탁함)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공모전 등) 제도의 연구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경관 조례」에 따른 성남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경관 조례」에 따른 성남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그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가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어두운 골목길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가와 도시공간 5.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 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성남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성남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사업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성남시민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안을 자유롭게 수렴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도시환경사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은 성남시 모범시민상의 지역안정부문 외 다른 부문에서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남시 안전귀갓길 조성 조례」 신설안 |

「성남시 안전귀갓길 조성 조례」 신설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등" 이란 도로 폭이 좁은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비상버저" 란 위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를 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호출 시스템이다.

제3조(설치 장소)

① 성남시청은 LED방범등과 비상버저를 설치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LED방범등이 아닌 기존 가로등이 있어 상대적으로 어두운 골목길

② LED방범등과 비상버저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범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기준) LED방범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방범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범등의 설치 기준에 따라 LED방범등으로 교체 설치한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비상버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비상버저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누를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로 설치하고 장난으로 누를 상황에 대비하여 밑부분에 틈이 있는 덮개를 씌운다.
4. 소형카메라는 비상버저 위쪽에 설치하고 카메라의 시야가 최대한 넓도록 조정한다.

제5조(예산 확보) 성남시장 및 성남시의원은 매년 안전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4 기대효과

- 도시환경디자인으로 성남시 경범죄, 폭력, 납치 등의 중범죄를 감소시킨다.
- 범죄의 표적이 아니더라도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안감도 낮출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성남시 뒷골목 또는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 아동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고 실제 경관 개선은 아동의 정신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준다.
- 시각적 효과 처리로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 유흥업소 밀집구역에 시행함으로써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 물리적인 효과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책제안

의안발의 08

성남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Clean Seongnam TF팀 / 환경복지상임위원회

01 문제인식

성남시는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까지도 길거리나 버스 정류장 등 여러 곳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통을 없애는 강경책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들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성남시의 쓰레기에 관련한 정책들을 제안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이 직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점에 대해 처음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청소년들에게 과연 필요한 노력들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정책과 조례의 탄탄한 기반은 청소년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 환경과 청소년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청소년이 아니어도 주변 환경이 좋으면 정서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는 결과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번화가나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있는 환경만 잘 개선한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환경이다.

성남시를 걸어 다녀보자. '전봇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 와 '길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등 성남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성남시에서는 이런 풍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줄이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자주 보이는 풍경들이다. 이런 문제들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성남시에도 현재 환경관련 조례를 두고 있고, 그 조례를 위해 여러 정책도 시행중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정책을 탐구하기로 한다.

02 현황조사

| 2-1. 현황 |

현재 성남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클린업 성남'을 발표,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실시하였다. '클린업 성남'대책은 시민 홍보 및 참여, 청소행정 사업 확대, 계도 단속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성남시는 그 중 시민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클린업 성남' 발표 한 달 전부터 성남시에서는 40만 매의 분리배출 홍보물과 계도 홍보 현수막 약 600개, 전단지 약 70만부를 제작 하여 배부했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단체를 연계한 시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참여를 촉진시켰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리배출을 위한 그물망 등을 배부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단속반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단속 강화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다시 현실을 봐야한다. 성남시는 아직까지도 쓰레기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특히 수정구 중원구에 많은 골목 사이와 길거리들 혹은 야탑 광장이나 서현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로 비위생적이며 냄새로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야탑 광장이나 수정구 중원구의 길거리는 전봇대 가로등 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성남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없애는 강경책을 실시 성남시 과내 모든 쓰레기통을 철거하였으나 이는 쓰레기 무단 투기 억제를 위해 실시했다는 것에 비해, 쓰레기통 부족이라는 시민들의 민원만 늘어났을 뿐이었다. 실제로 경인일보의 한 기사를 살펴보면, 관내 쓰레기통을 없앴던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경기도 몇 도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등의 쓰레기통 철거로 정류장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많아졌다는 내용이며 시민의식 성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의견과 대립 중이라는 기사이다. 이처럼 시민들은 부족한 쓰레기통에 대하여 불만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다.

한편 부족한 쓰레기통의 문제는 전봇대나 가로수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명 '쓰레기 거점'이 형성되게 하였으며 유동이 많은 정류장 등에는 의자가 쓰레기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쓰레기통 설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쓰레기통 설치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쓰레기통 배치는 깨끗한 길거리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례도 충분히 많다. 실제로 서초구에서는 쓰레기통 설치에 대하여 실험을 하였다. 서초구는 지난 2016년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구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10개를 시범 설치 운영 하였고, 3차례 수거 분석 한 결과 플라스틱, 종이컵 등 재활용품 만 95% 배출되었고,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5%에 불과했다. 이는 길거리 재활용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 중 하나로 밝혀졌던 사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점이다.

| 2-2. 사례 |

① **재활용 분리수거함 쓰레기통 (서초구)** : 스테인리스 재질에 높이 120cm, 폭 70cm 크기의 길거리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다. 수거함 바닥과 상단에 분리수거함 문구와 국제표준 재활용 그림문자를 부착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길거리에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전봇대 쓰레기통 (광주시)** : 전봇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전봇대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③ **투명 자원 봉투 (일본 나고야)** : 일본 나고야 시에서는 투명 자원봉투를 활용하여 재활용을 촉진 시키고, 선별 수거를 간편하게 하게 하고 있다.

① 재활용 분리수거함 쓰레기통 (서초구)

② 전봇대 쓰레기통 (광주시)

③ 투명 자원 봉투 (일본 나고야)

03 정책

| 2-1. 제안내용 |

1) 투명 자원 봉투 시범 운영

- 기간 : 1년
- 내용 : 중원구 수정구 내 동 단위로 시범 지역 선정, 투명 자원 봉투 시범운영을 통해 성남시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판단하여 성남시 전체에 적용
- 목적 : 성남시 투명 자원 봉투 활용 시 자원 재활용율 촉진

2) 배출 일련 번호 정책
- 내용 : 각 가정에 일정한 형식의 일련 번호 부여하여, 잘못 배출 한 가정을 쉽게 구별하여 과태료를 부과, 재활용 촉진
- 목적 : 자원 재활용 촉진과 감시 자원 재활용 관련 자료 확보

3) 전봇대 쓰레기통 설치
- 내용 : 불법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로수나 전봇대에 쓰레기통 설치
- 목적 : 쓰레기통과 자원 배출장 제공, 불법 무단 투기 억제 효과 촉진

04 기대효과

1)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2) 자원 재활용을 촉진 시켜 환경을 지킬 수 있다.
3) 쓰레기 불법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4) 쓰레기 배출장을 제공한다.

자유발언 **01**

고교 입시 엑스포 개최

김서영 | 인권권익상임위원회(이매중 3)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인권권익상임위원회 김서영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1월 10일에 성남시청에서 개최되었던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번 정책제안대회에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한솔고등학교 사회참여동아리 '소시오' 소속 1000%에서 제안한 정책인 '학교 플레이 리스트' 중 '고교입시엑스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교입시엑스포'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 내 고등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한 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별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략 5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8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입시엑스포는 왜 필요할까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한창 입시철이었던 지난주까지 저희 학교에서는 매일 "너 어느 학교 갈 거야?"라는 질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원서를 내기 직전까지도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가 없거나 주변에 아는 고등학생이 없는 청소년들은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설령 주변에 정보를 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한정된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교입시엑스포는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입시엑스포에서 청소년들은 첫째,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어떤 과목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과학 중점 학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등 고등학교별 특색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내 대회 수상작들을 보며 자신과 맞는 학교를 찾을 수 있으며, 셋째, Q&A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교 시간 등 학교 홈페이지나 입시 설명회로는 잘 알 수 없는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학 전에 미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곧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과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좀 더 성장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교입시엑스포를 통해 그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 02

플립러닝 활성화와 전문강사 양성 (자유학년제의 올바른 정착과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안)

장주빈 | 교육문화상임위원회(야탑중 2)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장주빈입니다.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자유학년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01 문제인식

2016년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실습이나 체험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꿈을 키우고 끼를 찾아주겠다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또 2017년 11월 6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올해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9일에 실시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약 1500개교에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중학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한 학기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짧아 학년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의 더 많은 중학교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 170시간 이상 오후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태를 살펴보면 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2017년 이후로는 제공된 교육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 제공된 자료도 정책적인 이론이나 교수학습 이론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학교에서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에 맞는 교과서나 지도서도 전문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학교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학기제에서 출발해 자유학년제가 잘 정착되고 있고 큰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체육·토론 및 체험활동 등에 주당 평균 8~10시간을 투입하느라 진도를 따라가기 위한 교과 수업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갑자기 많아진 학습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위해 시작된 자유학년제는 '학습절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시행되다보니 체험활동도 단순 견학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위 '노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나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가정의 학생이나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은 빠르게 나가는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지필평가가 아닌 수행평가로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모둠별 과제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자료나 전문적인 강사가 부족하다보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많아진 업무량과 달라진 프로그램에 적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서로에게 과제를 떠넘기며 상대방을 질시하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따돌리다 보니 좋지 않은 '학습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시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02 현황조사

6.13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었습니다. 이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물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학년제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에 소홀해질 수 있어 대다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 2-1 청소년들의 인식 실태조사 |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은 자유학년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야탑중학교 1학년~3학년 학생 7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했고, 중학교 2학년은 2017년에 자유학년제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은 올해 자유학년제의 대상인 학년입니다. 1학년 2학기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던 3학년과 1년 동안 자유학년제가 시행된 1, 2학년으로 크게 나누어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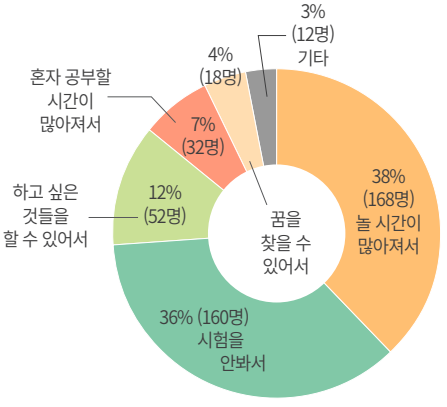

자유학년제를 해서 좋았던점 (1~2학년 4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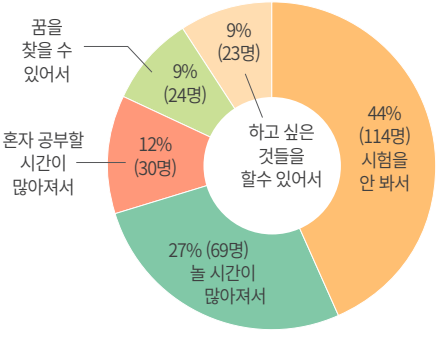

자유학기제를 해서 좋았던점 (3학년 260명)

먼저 자유학년제를 해서 좋았던 점은 '놀 시간이 많아서'라는 항목과 '시험을 안 봐서'라는 항목을 합치면 74%(328명)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학생들 사이에 '자유학년제는 시험을 안 보고 노는 1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학년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71%(183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고 놀 시간이 많아졌던 것'을 가장 좋은 점으로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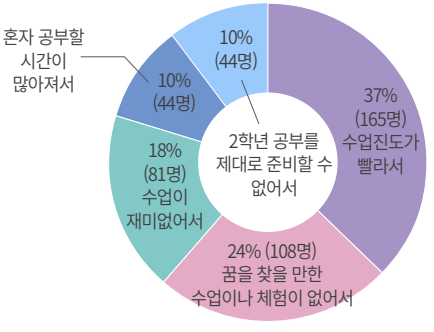

자유학년제를 해서 좋지 않았던점 (1~2학년 4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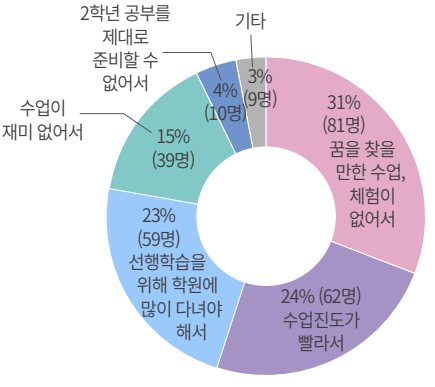

자유학기제를 해서 좋지 않았던점 (3학년 260명)

자유학년제를 해서 좋지 않았던 점은 '수업진도가 빨라서'라는 항목과 '꿈을 찾을만한 수업이나 체험이 없어서'라는 항목을 합치면 61%(27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학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에 많이 다녀야 해서'라는 항목이 23%(59명)로 3위를 차지한 점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1학년 1학기 때 지필평가를 치른 후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2학년 때의 성적 하락이 우려되어 미리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의견입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자유학년제가 아닌 자유학기제만 시행했던 학년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좋은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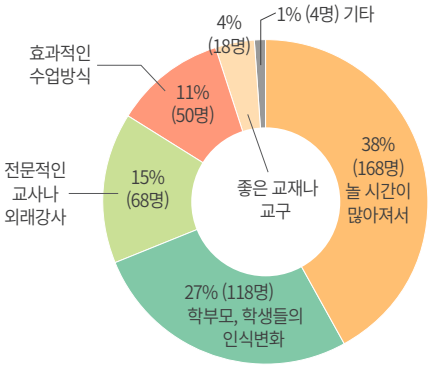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1~2학년 4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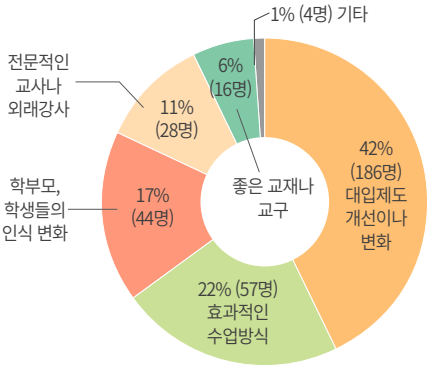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3학년 260명)

1학년과 2학년들 사이에서는 '대입제도 개선이나 변화'가 1위,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2위, '전문적인 교사나 외래강사'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3학년은 '대입제도 개선이나 변화'가 1위, '효과적인 수업방식'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이 진행되면서 효과적인 수업방식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업방식 중에서는 '토론'을 가장 효과 있는 것으로 느꼈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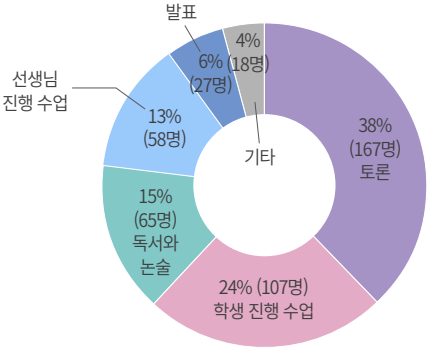

흥미를 느낀 수업 방식은 (1~2학년 4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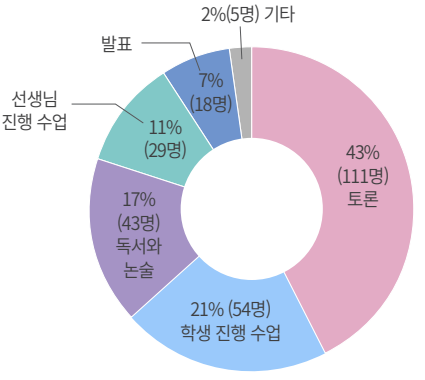

흥미를 느낀 수업 방식은 (3학년 260명)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학생들도 자유학기(년)제의 장점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점', '독서, 여행, 운동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었던 점', '꿈을 찾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개선이나 변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입제도의 개선'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며 적은 수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중학생들이 자유학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낀 '전문적인 교사나 외래강사', '효과적인 수업방식'이야말로 함께 고민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2 국내외 사례 |

우리나라에서도 플립러닝[1]이 대학교, 공교육,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립러닝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입니다. 카이스트(KAIST)의 플립 러닝은 'Education 3.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3.0 수업은 교수가 직접 찍은 온라인 강의와 토론·협동형 과제·실험 등의 오프라인 활동으로 구성되며 동영상을 통해 미리 개념을 배운 후 수업에 들어와서 조별 토론 등을 통해 심화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교수가 다음 학기 수업에 에듀케이션 3.0 모델을 적용해보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학교가 컨설팅을 통해 강의 내용에 적합한 학습 모델을 설계하도록 돕고 예산을 배정하며 전용 강의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5학년도 1학기 전체 1300여 개 강의 중 에듀케이션 3.0 모델을 적용한 강의는 총 54개였으며, 2017년에는 80여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플립 러닝도 'E-education' 프로그램에 근거해 201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IST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비율이 50:50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객관적 지식과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토론, 발표, 문제 풀이와 같은 창의적 응용 심화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학·석사 통합 과정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MOOC의 일종인 에드엑스(edX)를 수강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론, 발표, 실습을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AIST의 '에듀케이션 3.0' 프로젝트> 출처: 조선일보

이어 2014년에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에서 말하는 공부법을 수업에 적용시켰고, 고려대학교에서는 토론전용관을 설립해 플립러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에서도 2015년에 시작해 매년 45%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한다'는 '미래 인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계에게는 없는 능력, 즉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초중고 선생님들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활동을 눈여겨볼만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위기를 세계적 시야에서 재조명하고 위기의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동시에 위기를 돌파할 혁신적이고 즉각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육혁신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현재 '거꾸로 교실 학생캠프', '거꾸로 교실 청년캠프' 등을 개최하고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사최수프)' 페어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최수프'는 학생들이 진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인데 배움이 교실과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도록 모든 교과목을 연결해서 확장시킵니다. 학생들은 직접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교과 등 다양한 곳에서 얻은 정보들을 사용함으로써 배움의 동기를 새로 발견함은 물론 자존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활동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플립러닝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활용해 예습을 한 후 수업시간에는 토론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플립러닝을 도입한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강연은 하버드대학이나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수업으로 대체하고 담당 교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형태로 운영될 정도입니다. 플립러닝을 이용한 대표적인 교육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인데요. 이 학교는 투자를 받아 설립한 스타트업 교육기관으로서 미국대학교육협의회(KGI)에 등록되어 4년제 학위를 수여하는 정식

1)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흔히 '거꾸로 학습', '역진행 수업 방식'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 방식을 허용하고 유연한 학습 공간을 창조한다는 의미

대학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세계의 유수 석학들을 교수진으로 영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학생은 4년 내내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동시에 국가를 바꿔가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나 녹화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 수업'을 듣는 것인데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토론식 세미나 형태의 수업으로 한 수업 당 13~15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교수는 녹화된 수업을 보고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의 수업 모습> 출처: 중앙시사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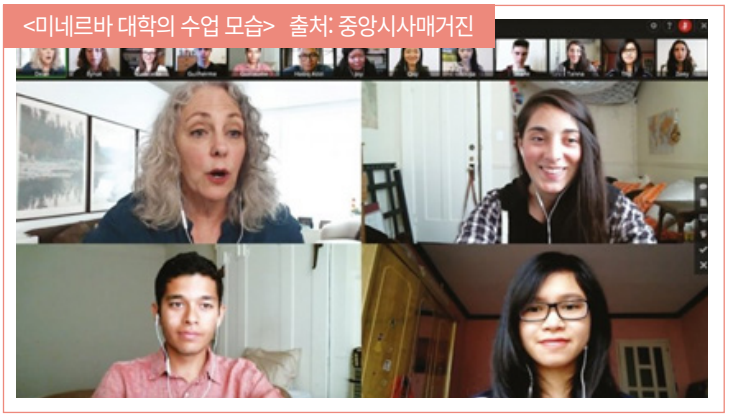

이런 변화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플립러닝에 맞는 토론과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교육자 역시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로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웬만한 지식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사는 '이론이나 논문을 많이 읽어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미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플립 러닝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문 강사 양성'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03 정책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직접 경험한 중학생들은 대입제도의 개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시행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중학생들도 모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들과 곧 중학생이 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다른 곳이 아닌 교육대상자인 청소년, 바로 중학생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중학생들은 입학 당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들 간의 토론'을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수업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 수업은 자신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 주었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유학년제의 본래 취지는 다양한 직업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대입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견학에 가까운 직업 체험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과연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도 해보기 전인 중학생이 진로부터 찾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그 논란이 뜨거운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존의 주입식 수업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식의 변화가 중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대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 수업'이 현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와 사회, 또 어른들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청소년들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나 외래 강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으로 '플립 러닝의 활성화와 전문 강사 양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흔히 '거꾸로 학습', '역진행 수업 방식'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 방식을 허용하고 유연한 학습 공간을 창조한다는 의미의 '융통성 있는 환경(flexible environment)', 학습자 중심으로 변하는 '학습 문화(learning culture)', 학습자 주도의 학습 문화나 교수자의 정교한 수업 설계에 의한 의도성을 가진다는 '의도적 학습 내용(intentional contents)', 교수자가 교육학적 지식뿐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적 소양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교육자(professional educator)' 등의 특성을 가집니다(박기범, 2014). 플립러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업을 반복적으로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고 학생 중심의 토론과 협업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에 대한 요령과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가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수업관련 콘텐츠에 접근이 쉬워지며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학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플립 러닝'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미래교육의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실험단계인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어려울 경우 플립 러닝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학습 환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플립 러닝의 활성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학부모나 학생 모두 새로운 유형의 교육 방식에 대한 불안감, 학습 시간 증대에 따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플립 러닝의 성공 여부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졌는지, 플립 러닝의 기획이 학습자의 역량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혁신적 수업 기법으로 평가받는 플립 러닝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반드시 교수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지 새로운 교육 기법이라고 해서 플립 러닝을 채택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수업 시수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플립 러닝을 채택할 경우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주당 10시간 정도 오후에 수업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체험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래 강사들의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주체가 바뀌었을 뿐 수업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오후 수업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간에 플립 러닝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론 방식의 수업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거둬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잠재력과 능력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올해 3월 자율동아리인 '스피치 동아리'를 만들어 부장으로서 1년간 운영해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친구들과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미 충분히 느꼈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자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잠재력을 펼칠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는 1년 동안 오후 수업의 절반 이상에 플립 러닝을 과감하게 도입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수업 전에 스스로 준비하고 공부한 후 수업 시간에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바람직한 교육방식이라고 해도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그로 인해 의지가 부족해진 학생들을 위한 도움이 먼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플립 러닝은 교수자의 노력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교육 방법입니다. 교수자는 일반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질의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며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기존의 교사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수업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전 학습과 수업 이후 이루어져야 할 사후 학습을 도와줄 전문 강사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많은 양의 수업, 학생지도, 생기부관리 등 지나치게 많은 업무로 인해 이미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업 시간 전이나 방과 후에 교사들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까지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플립 러닝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지식 전달자를 넘어 전문성과 코치의 모습을 갖춘 강사들을 각 지역 중학교에 투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 후 시간에 손길이 필요한 중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04 기대효과

플립 러닝의 활성화와 전문 강사의 양성은 학부모나 중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자유학년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플립 러닝의 장점을 확대시키고 단점을 잘 보완한다면 우수한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며 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창의적인 인재 양성까지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학력 격차 심화를 예방하고 학업성취도 차이가 큰 학생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던 기존의 수업 방식을 버리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발표와 토론 수업이 자리 잡는다면 학력 격차는 해소되고 학생 간 소통과 교류가 늘어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배움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타와 질시가 가득한 현재의 교실 분위기를 배려와 협동이 가능한 훌륭한 교육 환경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는 좋은 교우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부록

전체 회의록(2018. 3.17. ~ 2019. 1.12.)

구분	일시	주요내용
1	2018. 3. 17.	의장, 부의장 선출 및 슬로건, 명함 등 운영 회의 진행
2	2018. 3. 24.	상임위원회, TF팀,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구성
3	2018. 4. 7.	TF팀 활동경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4	2018. 4. 14.	“토크콘서트” 대비 특별위원회별 업무 배분 및 역할 결정
5	2018. 5. 12.	성남시장 예비후보 공약제안서 전달 현황보고, “토크콘서트” 리허설 진행
6	2018. 6. 9.	“성남시청소년제안포럼” 운영 방안 제시 및 “토크콘서트” 평가회의 진행
7	2018. 6. 16.	하반기 교류 워크숍 계획 논의 및 포럼 준비회의 진행
8	2018. 7. 14.	고양시, 양산시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워크숍 세부 사항 준비
9	2018. 8. 11.	TF팀 진행상황 보고 및 포럼준비 경과 보고
10	2018. 8. 25.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포함 총 3건의 규정 개정 진행 및 포럼 리허설 진행
11	2018. 10. 20.	전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교류활동 준비회의 및 안건 심의 결과, 수정 상정안 제출
12	2018. 11. 24.	제안대회 평가회의 및 상정안 의결 등
13	2018. 12. 8.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간담회 답변서면 공유
14	2019. 12. 15.	본회의 리허설 진행
15	2019. 1. 12	해촉의원 의원직 복권 의결, 정책연구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상정안 외 5건 의결 및 본회의 평가회의 진행

※ 전체회의 회의결과 수록(상임/특별 위원회, 윤리위원회, TF팀 등 회의록 제외)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차 회의록

일 시	2018. 03. 17.(토) 09:30~11: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
진행자	김서영(부의장), 최선웅(의장), 김주환(코디네이터), 김마리(간사)	기록자	안재훈, 이현우
참석자 (총 21 명)	김민채, 김범진, 김서영, 김선율, 김설리, 김정화, 김효찬, 박성원, 박주형, 박수한, 서대환, 안재훈, 양경민, 엄효정, 이현우, 장윤지, 장주빈, 최선우, 최선웅, 허지웅(조퇴), 홍승민		
주요안건	1. 의장, 부의장 선출 2. 의회 운영 3. 의회 총서기 선출 4. 의회 슬로건 선정 5. 임시 윤리위원회 의원 선출 6. 의원 명함		
회의내용	1. 의장, 부의장 선출 ① 의장 선거 - 단일 후보(최선웅 의원)로 출마하였음. - 의장 후보의 주요 공약 사항은 카페 참고 바람. - 재적 인원 27명, 현장 출석 21명, 사전투표 6명, 총 27명 전원 투표에 참여함. - 투표는 비밀투표, 보통선거의 원칙을 준용함. - 투표결과, 찬성 17표, 반대 10표, 기권0표로 최선웅 후보 당선됨. ② 부의장 선거 - 단일 후보(김서영 의원)로 출마하였음. - 부의장 후보의 주요 공약 사항은 카페 참고 바람. - 재적 인원 27명, 현장 출석 21명, 사전투표 6명, 총 27명 전원 투표에 참여함. - 투표는 비밀투표, 보통선거의 원칙을 준용함. - 투표결과, 찬성 25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김서영 후보 당선됨. 2. 의회 운영 - 2대 권고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연임 의원 회의에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투표를 진행함. - 투표결과, 찬성 1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됨. 3. 의회 총서기 선출 - 단일 후보(이현우 의원)로 출마하였음. - 재적 인원 27명, 조퇴 1명, 출석인원 20명 투표에 참여함. - 투표는 거수로 진행됨. - 투표결과, 찬성 19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현우 후보 당선됨. 4. 의회 슬로건 선정 ① 제안자는 제안 배경 소명의 기회를 가짐. ② 투표는 총 5회에 걸쳐서 진행됨. - 1차 투표는 1인 2표, 2차 투표는 1차 최다득표한 3개 제안 안에 대해 1인 1표, 3차 투표는 2회 최다득표한 2개 제안 안에 대해 1인 1표로 진행, 2/3이상 득표한 것으로 결정, 4차 투표는 3차 투표와 동일한 방식, 5차 투표는 1인 1표로, 최다득표 제안 안을 최종 선정함. - 모든 선거는 거수투표로 진행됨. ③ 1회 투표 결과 - 청소년의 미래는 청소년이 만들어갑니다 ---------- 3표 - 청소년이라는 하늘에 반짝이지 않는 별은 없다 ---------- 7표 - 청소년이 행복해야 국가의 미래가 밝다 ---------- 1표 - 청소년의, 청소년의 의한,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성남시 ---------- 5표 -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 ---------- 3표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을 리드하라! ---------- 10표
- 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 7표
- 청소년이 성남의 원동력이다 ---------- 1표
- 기권 3표

④ 2회 투표
- 청소년이라는 하늘에 반짝이지 않는 별은 없다 ---------- 2표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을 리드하라! ---------- 8표
- 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 8표
- 기권 2표

⑤ 3회 투표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을 리드하라! ---------- 9표
- 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 10표
- 기권 ---------- 2표

⑥ 4회 투표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을 리드하라! ---------- 8표
- 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 10표
- 기권 2표

⑦ 5회 투표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을 리드하라! ---------- 9표
- 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 10표
- 기권 1표

⑧ 슬로건은 "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로 결정됨.

5. 임시 윤리위원회 선출

① 임시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때 까지, 출석을 기록함.

③ 2대 연임 의원이 임시 윤리위원 역할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기각됨.

④ 임시로 김서영 의원이 출석기록을 담당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김서영 의원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기각됨.

⑤ 임시 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함.
- 단일 후보(김선율 의원)로 출마함.
- 재적인원 27명, 조퇴 1명, 출석인원 20명 중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20인으로 찬성 13 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김선율 후보가 당선됨.
- 투표는 거수투표로 진행됨.
- 임시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와 벌점 규정에 관한 설명을 함.

6. 의원 명함 관련 결정 사항

① 디자인, 구성 관련
- 1면 우리말, 1면 영어 표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 투표를 진행함.
- 재적인원 27명, 조퇴 1명, 출석인원 20명 중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투표결과를 준용하지 않음.
- 명함에 슬로건 표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 투표를 진행함.
- 재적인원 27명, 조퇴 1명, 출석인원 20명 중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투표결과를 준용하지 않음.
- 명함 관련 내용의 결정은 3/24 전체회의로 연기함.

결정사항	위 내용과 같다.
건의사항 및 기타	없음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2차 회의록

일 시	2018. 3. 24(토) 9:30~12: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
진행자	김서영 부의장	기록자	이현우
참석자 (총 26 명)	김범진, 이현우, 김선율, 박성원, 김민채, 김설리, 최선우, 김서영, 서준교, 양수진, 박수한, 서대환, 박주형, 엄효정, 장윤지, 이해인, 장주빈, 김효찬, 김유진, 최민석, 허지웅, 조수빈, 양경민, 안재훈, 최선웅(조퇴), 김정화		
주요안건	1. 상임위원회 구성 2. TF 팀 논의 3. 특별위원회 구성 4. 윤리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 최선웅 의장의 개인사유로 조퇴하여 부의장이 진행함. * 지난 임시회의 후 2대 연임의원들 간 회의 결과로 현 체제를 유지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와 의결 역할만 담당하며, TF 팀의 비중을 늘리고, 1인 1 TF 팀을 권장. **1. 상임위원회의 의원 배정이 완료됨. (구성원 명단 참고바람)** -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박주형 의원, 서기 허지웅 의원, 윤리위원 양경민 의원 - 인권권익상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화 의원, 서기 김서영 의원, 윤리위원 양수진 의원 - 환경복지상임위원회에 위원장 김설리 의원, 서기 김범진 의원, 윤리위원 김선율 의원으로 결정됨. **2. TF 팀별 홍보 이후 구성원 회의를 진행함.** - 전체회의에 TF 팀 회의 시간을 공식화하지 말자는 의견에 회의를 진행함. - 전체회의 시간 구성은 의장단이 필요에 따라 조정하기로 결정. * 3.27 수요일 까지 TF 팀 개설 신청서 카페에 게시. **3. 특별위원회 구성.** - 대외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복의회 대표 및 성남시 대표로 경기도 차세대위원 당연 겸임을 맡는다. (년 4회 참석) - 행사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성원 의원, 서기 및 윤리위원 김범진 의원, 이현우, 김선율, 김민채, 김설리, 최선우, 김서영, 서준교 의원으로 구성. - 대외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주형 의원, 윤리위원 서대환 의원, 양수진, 박수한, 엄효정, 장윤지의원으로 구성. -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유진 의원, 서기 김서영 의원, 윤리위원 이해인 의원, 김범진, 박수한, 김선율, 장주빈, 김효찬, 최민석, 허지웅, 박성원, 양경민 의원으로 구성. -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지웅 의원, 서기 조수빈 의원, 윤리위원 서준교 의원, 안재훈(사진기사), 허지웅, 장윤지, 양경민 의원으로 구성. - 위와 같이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별 회의를 진행함. **4.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선율 의원, 양수진, 양경민, 김범진, 서대환, 서준교, 이해인 의원으로 구성 됨.**		
결정사항	위 내용과 같다.		
건의사항 및 기타	없음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3차 회의록

일 시	2018. 4. 7.(토) 09:30~14:00	장 소	성남시의회 회의실
진행자	최선웅 의장	기록자	홍승민 의원
참석자 (총 21 명)	김설리 의원 등 21명		
주요안건	1. TF팀별 활동경과보고 2. 특별위원회 활동경과보고		
회의내용	1. TF팀 별 활동경과보고 1) 정치교육 TF팀 [박주형 의원] : 성남시 민주시민조례 개정 및 정치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준비. 2) 쓰레기 제로화 TF팀 [안재훈 의원] : TF팀의 목적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방선거 공약 정책제안을 준비. 3) 교육방법 TF팀 [엄효정 의원] :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서준교 의원에게 학교 교육 형태를 듣고, 앞으로의 활동을 준비. ※ TF팀별 회의록 참고 2. 특별위원회 활동경과보고 1) 미디어특별위원회 : 의회 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서비스 시작을 공지함. -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차후에 예정된 토크콘서트의 주제가 확정되면 주제에 따라 홍보 영상제작에 노력하겠음. 2) 혁신위원회 : 윤리위원회 판단규정 개정 - 제 9조 5항 사전공지에 대한 규정을 최소 1일 이상 사전에 윤리위원회에 사전공지 해야 함으로 개정하고자 함. - 증빙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함. - 추후에 윤리위원회와 연임관련 규정을 1회 연임가능에서 연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활동규정에 청년코디네이터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TF관련 규정도 추가할 예정. 3) 대외교류특별위원회: - 토크콘서트 관련 회의를 통해 다음 주 토요일에 청문위(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와 미팅을 추진 할 예정. - 박주형의원이 「성남시학생인권조례안」을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출석 시 제안하기로 결정. 4) 행사추진특별위원회 : 토크콘서트 주제 및 운영 기획 관련 - ‘터놓고 이야기하는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 결정.		

	- 주제토의와 스케치북 토크쇼의 진행 순서를 결정해야 함. - 전문가 패널 1명 이상, 행복의회 의원 중 4명이 패널로 참석하기로 함. - 스케치북 토크쇼의 진행은 행복의회 이현우 의원이 맡기로 함. ① 홍승민 의원 : 정당인 이준석을 토크콘서트에 강연자로 제안하였음. 이준석 씨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현재 활동하는 점을 고려해 추후 다뤄보기로 함. ② 최선웅 의장 : 예비 후보들에게도 토크콘서트 초청장을 전달하기를 제안. **의결내용 : 주제토의와 스케치북 토크쇼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가?** - '스케치북 토크쇼'는 사전에 사연 신청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자가 진행을 하는 것임. - '주제토의'는 사전에 제시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 - 작년의 토크콘서트 기록을 참고해 의견을 받기로 결정. - 행사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보고. ① 서준교 의원 : 주제토의 이후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자 ② 최선웅 의장 :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텐데, 오후에 했을 때는 '맥이 빠질' 우려가 있음. 장점으로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 "스케치북 토크쇼를 먼저 한 후 분임 토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에 과반수의 의원들이 찬성함. 행사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권고함.**
결정사항	위 내용과 같다.
건의사항 및 기타	없음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4차 회의록

일 시	2018. 4. 14.(토) 09:30~12: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
진행자	의장 최선웅	기록자	이현우
참석자 (총 23 명)	김민채,김범진,김서영,김선율,김유진,김정화,김효찬(조퇴),박성원,서대환,서준교,안재훈,양경민, 양수진,엄효정,이해인,이현우,장윤지,장주빈,최민석,최선우(조퇴),최선웅,허지웅,홍승민		
주요안건	토크콘서트 운영 관련 위원회별 회의 및 혁신위 상정안		
회의내용	1. 공지사항 전달 - 전체회의 시 필요한 인쇄물은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카페에 게시할 것. - 명함 시안이 화~수요일 사이에 카페에 게시될 예정이니, 빠른 진행을 위해 수정사항 공유할 것. - TF팀 및 위원회 별 예비후보 대상 공약제안서 전달을 위해 4월 말까지는 정책제안서를 완성해주길 당부. - 5월 19일 토크콘서트는 행복의회가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의원이 필수 참석. 2. TF팀 회의: TF팀 별 회의 진행 3. 특별위원회 회의/발표 - 행사추진특별위원회: 토크콘서트 강연자, 진행자, 사회자, 패널 면접 진행. - 미디어특별위원회: 토크콘서트 운영 관련 홍보전략 구상(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한 토크콘서트 홍보) - 혁신특별위원회 : 김유진 위원장의 자진사퇴 요청으로 위원장 재선출(김효찬 의원 당선), 규정 개정 관련 상정안 제출 예정. - 대외교류특별위원회: 청소년 재단 시설 소속 청운위, 각 학교 학생회 초청장 발송, 각 학교 공문발송, 초대장 직접 제작 후 시의원 전달 등 토크콘서트 관련 교류방법 논의 - 특별위원회 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회의록을 카페에 게시하기로 함. 4. 전체회의 1) 청소년 주간 행복의회 부스 운영 - 토크콘서트 준비로 인해 시간과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이번 청소년 주간에 행복의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함. 2) 토크콘서트 운영 - 토크콘서트 방향에 대하여 공지. - 소그룹 토의 주제 신청은 다음 주까지 받기로 함. 3) 혁신위원회 상정안 관련 논의 - 시간관계상 상정안은 다음회의에 진행하기로 함. - 상정안을 카페에 공지하여 모든 의원이 사전에 읽어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		
결정사항	혁신특별위원회 규정 개정 상정안 카페에 게시, 확인 요망		
건의사항 및 기타	없음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5차 회의록

일 시	2018. 5. 12.(토) 09:30~12: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
진행자	부의장 김서영	기록자	이현우
참석자 (총 22 명)	김민채, 김범진, 김서영, 김선율, 김설리, 김정화, 박성원, 박수한, 박주형, 서대환(조퇴), 서준교, 안재훈, 양경민, 양수진, 엄효정, 이현우, 장윤지, 장주빈, 최민석, 최선우, 허지웅, 홍승민		
주요안건	1. 공지사항 2. 칭찬 카드 작성 3. 특별위원회 회의 4. 토크콘서트 리허설 5. 혁신위 개정안 발표		
회의내용	의장의 불참으로 인해 부의장 김서영 의원이 진행함. 1. 공지사항 전달 1)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 현황 보고 - 5. 11.(금) 성남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박정오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 대상 공약 제안서 (귀갓길 안전 등 4건) 전달, 추후(다음주 예정) 은수미 후보 전달 예정 2) 6월 정기회의 일정 안내 - 6월 9일, 16일 진행 3)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 & 원탁토의 관련 - 행복의회 의원은 9시까지 성남시청 한누리홀로 집결 - 토크콘서트 홍보 및 참가자 모집에 집중 바람. 2. 칭찬 카드 작성 - 의정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주도 하에 칭찬카드 작성의 시간을 가짐. - 추후 윤리위원회 검토 후 포상 예정. 3. 특별위원회 회의 - 대외교류 특별위원회: 은행동/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토크콘서트 초대장 전달 예정. - 행사추진 특별위원회: 토크콘서트 & 원탁토의 진행 사항 공유. · 스케치북 토크쇼 및 주제별 원탁토의 진행시 성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람. · 주제별 원탁토의 진행 시 의원들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시간 엄수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 참가자 모집을 위해 적극적 홍보 바람. - 미디어 특별위원회: 공약제안서 전달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게시. - 혁신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행복의회 규정 개정, 행복의회 규정 신설 관련 상정안 검토. 4. 토크콘서트 리허설 - 실제 진행될 사연을 기반으로 토크콘서트 사전 리허설 실시. 5. 행복의회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및 신설 1)행복의회 규정 개정 - 제9조(의원의 자격상실) 5항 3호, 제22조(특별위원회) 3항, 제23조(윤리위원회) 2항, 제24조(의원의 타위원회 및 TF팀 출석과 발언) 1항, 제25조(상임위원회의 직무), 부칙 제3조(특별위원회 활동기한) 개정. - 재적인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으로 최종 가결. 2)행복의회 규정 신설 - 제13조(청년 정책자문위원), 제25조(TF팀) 항목 신설. - 재적인원 21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 3)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성립요건) 1항, 윤리위원회 판단규정 제4조(상점) 5항, 제6조(벌점) 2항 개정. - 재적인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최종 가결.		
결정사항	혁신특별위원회 규정 개정 상정안 카페에 게시, 확인 요망		
건의사항 및 기타	없음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6차 회의록

일 시	2018. 6. 9.(토) 09:30~12:30	장 소	성남시의회 회의실
진행자	최선웅 의장	기록자	홍승민 의원
참석자 (총 21 명)	김설리 의원 등 21명		
주요안건	1. TF팀별 활동경과보고 2. 특별위원회 활동경과보고		
회의내용	1. 공지사항 전달 1) 성남시청소년제안포럼 운영 방향 제시 - 9. 1.(토) 진행될 포럼에서는 경기도 내 청소년 참여기구와 함께 진행할 예정. 2) 봉사활동 시간 관련 안내 - 봉사활동은 분기별로 입력되며, 봉사 시간 관리는 각자 본인이 해야함. 3) 코디네이터 - 다음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코디네이터 활동이 어려움. 2.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 안건 논의 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 성남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됨. - 제21조 3항- 금지→자제로 수정. - 제24조 4항-생리활동→생리현상에 따른 활동으로 수정. 3. 상임위원회 회의 보고 1)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 방안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 예산과 행정적 지원. -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 내 홍보 확대: g버스 내 홍보영상 배포. - 지역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재단 내 시설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 - 특별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사회 참여 교육 진행. - 성남시만의 청소년 통합 지원 사이트 개설: 청소년 활동 검색, 자치기구 활동 공유, 정책제안 및 청원 등의 기능 탑재.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 학교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현 재단의 홍보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고, 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홍보방식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됨. - 영상물 및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공모전 진행. - SNS 홍보 확대. 2) 포럼 운영방향 논의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 각 참여기구 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활동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할 계획. - 인원이 많은 관계로 분임 토의 등 공통된 활동 진행: 세부/공통주제, 포괄/다양주제 모두 장단점이 있음.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 이슈를 담은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인권, 교육, 도박을 토의 주제로 제시.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 포럼 중간에 축하공연 진행.
- 유머러스한 전문 강사 초청 강연.

4. 토크콘서트 평가회의 의원 발언(최대한 발언 그대로 기록함)
- 김선율 의원: 주제 토의를 통해 문제 제기도 하고 좋았다. 청소년 행복 의회 홍보에도 도움을 주어 좋았다. 개인적인 의견을 정해버리는 강연자님의 태도가 많이 아쉬웠다.
- 장주빈 의원: 청소년 참여율이 매우 좋았다. 주제토의에서 조장을 맡아 토의 했는데 매우 좋았다.
- 박성원 의원: 진행자도 잘하고 분위기가 좋아 토의방식이 좋았다. 주제 토의 때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좋았다.
- 김민채 의원: 스케치북을 이용해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이 좋았다
- 김정화 의원: 올해는 홍보를 통해 일반 학생이 많이 참여했던 점과 청소년 강연자의 강연이 매우 좋았다.
- 엄효정 의원: 너무 광범위한 주제여서 소주제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 장윤지 의원: 원하지 않은 주제토의에 참여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웠다.
- 문하람 의원: 많은 것을 느꼈고, 스케치북을 이용한 것은 좋았다. 시간이 매우 길었던 점이 아쉬웠다.
- 안재훈 의원: 라이브 방송 진행시 삼각대가 필요하다.
- 양경민 의원: 시간이 많이 길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 최선우 의원: 홍보도 될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 준비도 잘했던 것 같다. 토의 조에서 1순위로 선정된 주제가 아니라 적극적이지 않았다.
- 김효찬 의원: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는 했지 못했지만 스케치북을 이용한 것이 좋았다.
- 김범진 의원: 주제가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다.
- 홍승민 의원: 스케치북 토크쇼가 루즈 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스케치북 토크쇼가 더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강연자가 좀 더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제토의 진행시 주제 별 전문가도 토의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 박주형 의원: 강연자가 길었다. 스케치북 토크쇼가 좋았다. 진행도 매끄러웠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다.
- 이현우 의원: 진행자로서 진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 마무리되어서 전체적으로 좋았다.
- 김설리 의원: 스케치북 토크쇼는 반응이 약간 죽었었던 부분이 아쉬웠다. 원탁 토의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 최민석 의원: 친구들을 초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길어 거절 받았다는 점이 아쉬웠다.
- 김서영 부의장: 원하지 않은 주제에 원탁 토의를 했던 부분이 아쉬워서 인원에 치우치지 않은 조 분배였으면 좋겠다. 원탁 토의 때 간식이 아쉬웠다. 토크콘서트의 결과물을 행복의회가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 최선웅 의장: 스케치북 토크쇼에서 생각을 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은 매우 좋았다. 행복의회 의원들이 원탁 토의 할 때 청소년들의 생각을 꺼낼 수 있었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이 아쉬웠다. 행복 의회 의원이 퍼실리데이터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5.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위원회 판단 규정 개정

1) 제6조(벌점) 2항 윤리위 해부 벌점 기준 및 항목 별 벌점 규정 개정.
- 재적인원 2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

2) 제6조(벌점) 5항 2 벌점 규정 항목 11번은 항목 12번과 같은 벌점으로 적용.
- 재적인원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3) 기타 질의응답
- 단체 카톡방에서의 윤리위원회 벌점 규정 항목 9번 위반 사항은 적용 안 됨. 회의 에서만 적용.
- 사전공지 후 증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각성을 파악 했고, 벌점 2점으로 상승.
- 윤리위원회 벌점 규정 항목 9에 대한 단속이 부족했고, 벌점 4점으로 상승.
- 윤리위원회 벌점 규정 항목 8에 대하여 즉시 0.5점으로 하자는 의견에 2회시 0.5점을 그대로 적용.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7차 회의록

일 시	2018. 06. 16.(토) 09:00~12: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
진행자	최선웅 의장	기록자	안재훈
참석자 (총 20 명)	김민채, 김범진, 김서영, 김선율, 김설리, 김정화, 김효찬, 박성원, 박수한, 박주형, 서대환, 안재훈, 양경민, 엄효정, 이해인, 장윤지, 장주빈, 최민석, 최선우, 최선웅		
주요안건	1. 제3회 성남시청소년제안포럼 계획 논의 2. 하반기 교류 워크숍 계획 논의 3. 특별 위원회 회의		
회의내용	**1. 제3회 성남시청소년제안포럼 계획 논의** 1) 6/9 회의에서 포럼 관련 결정사항이 재단 내 타 참여기구의 행사와 일정에 혼선이 발생해 실현이 어려워짐. 2) 작년 포럼은 토크콘서트의 연장선처럼 진행된 부분이 개선점으로 지목된 바, 개선해야할 것. 3) 원안대로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 지역 내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자치기구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기관별 활동 사례 발표 및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 등 공통주제에 대한 주제토론 진행 방안을 제안. **2. 하반기 교류 워크숍 계획 논의** 1) 고양시 청소년 단체(고양시 청소년 의회, 차세대위원회)와의 교류워크숍. ① 일시: 2018.07.21.(토) 11:00~17:00 ② 장소: 미정 ③ 세부내용: 교류 활동: 단체소개 및 주제토의, 토의결과 발표. - 기관소개 발표자 : 김서영, 김정화, 박주형, 장주빈, 홍승민 이상 의원 5명. - 토의 주제 (一) 청소년 의회 및 차세대위원회의 대표성 관련 문제와 해결 방법. (二) 정책 제안 및 실현 과정에서 한계 및 해결 방법. (三) 청소년 의회 및 차세대위원회의 홍보 문제와 해결 방법. **2) 선대 행복의회 의원과 만남의 워크숍** ① 일시: 2018.07.21.(토) 18:00~ ② 장소: 중원청소년수련관 ③ 세부내용 : 요리경연대회, TF팀 진행사항 공유 및 피드백, 주제토론 - 선대 의원 준비물 : 행복의회 하면 생각나는 물건. - 요리경연 대회(18시~21시) : 식자재는 각 조별 의원이 별도로 준비, 경연대회 방식은 작년과 동일, 요리대회 심사를 위하여 대표이사님·국장님·부장님·의장님 참석여부 확인 필요. - TF팀 진행사항 공유 및 피드백(21시~23시): 진행 상황 부서별 보고 및 선배 의원으로부터 조언과 피드백을 받는 기회. - 주제토론(23시~): 행복의회의 미래와 발전을 주제로 주제토론 진행. **3. 특별 위원회 회의** 1) 포럼 관련 대외교류특별위원회, 미디어특별위원회, 행사추진특별위원회 연합회의 진행		

	① 신뢰도와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기본적 기조로 함. ② 주제는 청소년 참여기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 ③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포럼 초대장 제작을 맡음. ④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이용한 홍보 효과가 저조하다고 판단하나, 제한된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라이브 방송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⑤ 오프라인으로 직접 청소년 참여기구를 찾아가 초대장을 직접 주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판단해, 대외교류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성남시 청소년 참여기구를 찾아가 초대장을 전하는 것으로 한다. 2) 특별위원회 보고 ① 혁신특별위원회(자세한 내용은 혁신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참고) - 연임 규정 개정 상정안 준비 (연임과 관련한 사항은 행복의회 세부규정에 따른다. 라고 변경하고, 향후 행복의회 규정은 의원들 내부 협의를 통해 방향 설정) - 행복의회의 대표성 보완 문제: 차대 행복의회 의원 모집 지원 시, 일정 수 이상의 인원으로부터의 동의(ex 100인)를 받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TF 팀의 문제상황을 인식, 의원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TF팀 개수의 상한선 또는 하한선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추후 추가적인 논의 후 최종 결정하겠음.
결정사항	각 특별위원회 회의록 참고 요망.
건의사항 및 기타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8차 회의록

일 시	2018. 7. 14.(토) 10:00~13:00	장 소	성남시청소년재단 차오름실
진행자	최선웅 의장	기록자	서기 이현우
참석자 (총 21 명)	안재훈, 홍승민, 김선율, 김범진, 장주빈, 최선우, 김정화, 김설리, 김효찬, 양경민, 허지웅, 엄효정, 서준교, 장윤지, 박성원, 이해인, 양수진, 김민채, 김서영, 최선웅, 이현우		
주요안건	1.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청소년 FGI 2. 포럼 진행사항 공유 3. 교류 워크숍 준비 4. 단체 소개 발표 리허설		

회의내용

1.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청소년 FGI
- 경기대학교 남화성 박사님과 청소년재단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집단면담 실시.

2. 포럼 진행사항 내용 공유
1) 제안 축제, 포럼의 주제
- 제안 축제: 상상하라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 제안 포럼: 청소년 참여, 작지만 확실한 행동(소확행).
2) 주제토의
- 사례발표 후 토의 활동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
- 패널토의 이후 발표자 1명이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

3. 교류 워크숍
1) 교류 워크숍 공지사항
- 고양시와의 교류활동은 양산시청소년의회의 합류로 인해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
- 그룹별 토의 주제는 4가지, 1~3주제는 행복의회에서 제시하기로 결정.
- 선배의원과의 교류활동은 고양시와의 교류 이후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기로 함.
- 요리경연대회는 4조로 구성하여 진행.

2) 그룹별 주제 토의 조 구성
- 청소년의회(차세대) 대표성 문제 및 해결방안: 안재훈, 홍승민, 김선율, 김범진 최선웅
- 정책제안 및 실현과정에서 한계 및 해결방안: 장주빈, 최선우, 김정화, 김설리, 김효찬, 양경민
- 청소년의회(차세대)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허지웅, 엄효정, 서준교, 장윤지, 박성원, 이해인
- 청소년 의견수렴(정책, 아이디어 등)을 위한 방안 모색: 양수진, 김민채, 박주형, 서대환, 김서영

3) 요리경연대회 조 구성 및 메뉴
- 1조 : 홍승민, 장주빈, 이해인, 서준교, 장윤지, 안재훈(샤브샤브)
- 2조 : 김민채, 양수진, 김선율, 엄효정, 김정화(토마토, 크림 스파게티)
- 3조 : 양경민, 허지웅, 김서영, 서대환, 박주형(구성원이 오지 않아 개인적으로 결정)
- 4조 : 김설리, 최선우, 김효찬, 박성원, 김범진(꼬치구이)

	4. 단체소개 발표리허설 1) 발표자 및 발표내용 - 김정화 의원 : 행복의회 소개에 대한 발표(의의, 추진 근거, 운영방향, 조직도) - 박주형 의원 : 1~2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발표(슬로건, 인권 보장 조례) - 장주빈 의원 : 3대 활동 내용에 대하여 발표(구성 및 운영, 위촉식 및 워크숍, 활동 및 회의, 성남시장 후보 대상 정책 제안서 전달,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 수상 내용) - 홍승민 의원 :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추진과정) - 김서영 의원 : 청소년 행복의회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청소년 정책포럼,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본회의 개최, 제 4 대 성남시청소년 행복의회 모집, 활동 보고회 및 해단식) 2) 발표 피드백 사항 - 장주빈 의원의 후보 이름 오타 부분 수정 요청과 운영방식에서 TF팀은 기존에 있던 구성으로 설명 요청. - 홍승민 의원은 관련 전문 용어 선택 주의를 요청함. - 발표 자료에 사용 될 조직도 수정을 거수투표(공개투표)로 정하는 것에 대해 재적 인원 21명, 21명 참석, 21명 찬성으로 가결. - TF팀이 포함된 조직도로 변경에 대한 투표 재적인원21명, 21명 참석, 21명 찬성으로 가결. - 추후 혁신특별위원회에서 조직도 수정 예정.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9차 회의록

일 시	2018. 8. 11.(토) 09:00~11: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
진행자	의장 최선웅	기록자	이현우(총서기)
참석자 (총 17 명)	김민채 김서영 김선울 김설리 김효찬 박성원 박주형 서준교, 안재훈, 양경민, 양수진, 이해인, 이현우, 장주빈, 최선우, 최선웅, 홍승민		
주요안건	1. TF 팀 진행 사항 공유, 3. 연임규정 개정관련 논의	2.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경과보고 4. 활동지원비 축소 관련 논의	
회의내용	1. TF 팀 진행 상황 보고 (1) 청소년참여예산 TF 팀 -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심의에 청소년의 참여방안에 대한 두 가지 방안 내용 포함. (별도의 청소년 위원회 설치, 행복의회가 청소년 위원회의 역할 수행) 정책제안서 작성. - 8/8(수) 성남시청 예산법무과에 정책제안서 전달했음. (2) 쓰레기 제로화 TF 팀 - 2019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공모서 제출(성남시 쓰레기봉투 투명화 사업). -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와 함께 미팅. - TF방향 재설정을 위해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 중임. (3) 민주시민교육 TF 팀 - 정치교육 TF팀에서 민주시민교육 TF팀으로 팀명 변경. - 9/1 전에 본회의에 상정할 조례안과 정책제안서 초안을 준비하겠음. - 현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지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중. - 경기도차세대참여위원회 참여 2팀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 중임을 보고. 2.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경과보고 - 포럼 사회자: 박주형 의원 - 사례 발표자: 장주빈 의원, 홍승민 의원 - 패널 토의자: 최선웅 의장 - 선정된 의원들은 행사추진위원회 내부 회의 결과로 각 역할들은 의원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한 사항 (행사추진위원회 회의록 참고) - 패널 토의 주제: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 사회참여활동의 어려움, 한계와 해결방안과 대안 또한 제시할 것. 3. 연임규정 개정관련 논의 - 현재 연임 관련 규정이 성남시조례-제2812호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한 제안서 준비 중임을 보고. - 1안(1회 연임 기존 규정), 2안(연임금지), 3안(무기한 연임) 이상 3가지 방안으로의 규정 개정에 대한 거수투표 진행(선거를 통한 의원 선발을 가정함.) - 제 1안, 2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 제 3안에는 재적인원 21명, 출석 17명,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나타남. - 위 투표는 혁신특별위원회 참고 사항으로 활용할 예정. 4. 활동지원비 축소 관련 논의 - 활동지원비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다른 의정활동에도 요긴하게 사용됨. - 활동지원비의 존재 가치를 재단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하도록 주문함. - 차기 회계연도부터는 의회와 차세대위원회가 분리되는 점을 감안해, 할당되는 예산이 줄어 활동지원비가 축소된다면 수용하기로 결정.		
결정사항	위와 같음.		
건의사항 및 기타	없음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0차 회의록

일 시	2018. 8. 25.(토) 09:30 ~ 11: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
진행자	최선웅 의장	기록자	이현우(총서기)
참석자 (총 20 명)	김민채, 김범진, 김서영, 김선율, 김설리, 김정화, 김효찬, 박성원, 박주형, 서준교, 서대환, 안재훈, 양경민, 양수진, 이해인, 이현우, 장주빈, 최선웅, 최민석, 홍승민		
주요안건	1. 본회의 일정 2. 특별위원회 3. 포럼리허설		

회의내용

1. 본회의 일정

- 의원들이 재학중인 학교들의 시험 날짜, 방학 등의 일정을 고루 확인해 본회의 날짜를 결정하기로 함.

학교 별 기말고사 일정			
수내고등학교	11/19~11/27	숭신여자고등학교	12/11~14
이매중학교	11/27~28	성남금융고등학교	12/11~14
대원중학교	11/21~22	성남서중학교	12/26~28
야탑중학교	12/13~18	수진중학교	11/22~26 또는 23~27
동광고등학교	12/4~7		

2. 규정 개정 상정안 의결

- 혁신위원회 상정안(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조직도 개정안, 판단규정 7점 개정안) 보고.
- 거수투표를 진행(재적인원 20명, 참석인원 20명)

(1)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제3장 징계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조직) ① 윤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구임을 명시한다. 1. 윤리위원회는 특정 위원회에 포함관계나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윤리위원회는 조직도 상에서 연결선을 표시하지 않는다.	제9조(조직) ① 윤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구임을 명시한다. 1. 윤리위원회는 특정 위원회에 포함관계나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윤리위원회는 조직도 상에서 연결선을 표시하지 않는다. (단 의회와의 연결선은 허용한다.)

- 재적인원 20명, 찬성 1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

(2) 조직도 개정안

행복의회 조직도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 재적인원 20명,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으나 윤리위원회와 자문단의 위치가 적합한가에 대한 일부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특별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상정안에 대해 보류하는 것에 대해 거수 투표 진행, 만장일치로 보류

(3) 윤리위원회 판단규정 개정안

제3장 징계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징계) ① 윤리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 상벌에 대한 윤리위원회의를 소집한다. 1. 제6조의 제3항에 따라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제7조(징계) ① 윤리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 상벌에 대한 윤리위원회의를 소집한다. 1. 제6조의 제3항에 따라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 재적인원 20명, 참석인원 20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3. 포럼 리허설

(1) 사례발표 피드백

- 학교 소개보다 소속 상임위원회로 소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발표시간 단축할 것.
- 소개를 서두에 일원화하여 전체 발표시간을 단축할 것.
- 예산심의권에 대한 진행사항 재확인 필요.
- 은수미 시장의 행사참석 여부 재확인 필요.
- 발표할 때 누락된 부분 보완 필요.

(2) 패널 토의 발표에 대한 피드백

- 되도록 암기해 발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딱딱한 느낌이 있다.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1차 회의록

일 시	2018. 10. 20.(토) 09:30 ~ 11: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
진행자	의장 최선웅	기록자	이현우(총서기)
참석자 (총 20 명)	김범진, 김서영, 김선율, 김정화, 김효찬, 박성원, 박주형, 서준교(조퇴), 안재훈, 양수진, 엄효정, 이해인, 이현우, 장주빈, 최선우, 최선웅, 최민석		
주요안건	1. 1차 중장기 정보화 발전 전략 수립 인터뷰 2. 공지사항 전달		

회의내용

1. 1차 중장기 정보화 발전 전략 수립 인터뷰
   - 홍보와 참여 보상이 부족. - 신선하지 못한 컨텐츠. - 홍보 매체 활용 부족.
   - 유튜브 활용방안 등.
2. 공지 사항 전달
   - 12월 전체회의 일정 변경 12/1(토) → 12/8(토)
   - 전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교류활동
   10/27 (토) 09:30~12:00, 재단 사무국 차오름실
   - 교류활동 그룹 별 주제토의 주제 및 각 주제 신청자
   1) 청소년 참정권 보장 : 최선우, 박주형, 허지웅, 이현우, 김범진
   2) 인권보장(학생, 성차별, 성소수자, 페미니즘, 미투운동 등) : 박성원, 장주빈, 이해인, 김서영
   3) 소년법 개정 : 엄효정, 양수진, 최민석, 김효찬, 안재훈, 김정화
   - 본회의 진행순서 및 세부사항

구분		세부사항	
개회식	사회자	이현우 의원	
	개회사	최선웅 의장	
	격려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축사	성남시의회 의장	
	윤리헌장 낭독	장주빈, 서준교 의원	
	활동 경과보고	박성원 행사추진특별위원장	
의안발표	상임위원회 발의	교육문화	민주시민교육 성평등(성문화, 양성평등)
		인권권익	청소년 참여예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환경복지	청소년교통보호구역 Clean Seongnam 귀갓길 안전
조례안 투표			
자유발언		11/21 (수)까지 원고 제출, 11/24 (토) 면접 진행	
논평		성남시의회 의원	
참여소감		허지웅 의원	
폐회사		김서영 부의장	
폐회선언		최선웅 의장	

   - 상임위 별 1차 심의 결과 10/24 (수)까지 카페 게시
   - 11/21(수)까지 심의 결과 반영 수정본 제출
   - 11/24(토) 각 TF팀 별 전체회의 피드백 (2차 심의)
   - 11/28(수) 전체 피드백 반영 수정본 제출, 본회의 발표 원고 제출(활동보고서 P.113 참고)
   - 12/8(토) 본회의 발표 리허설 및 피드백, 12/15 (토) 본회의 최종 리허설
   - 12/20(목) 본회의 16:00~18:00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2차 회의록

일 시	2018.11.24.(토) 09:30 ~ 12:30	장 소	성남시의회 회의실
진행자	최선웅 의장	기록자	김정화, 이현우
참석자 (총 18 명)	김민채, 김범진, 김서영, 김선율, 김정화, 박성원, 박주형, 서준교, 양경민, 양수진, 엄효정, 이해인, 이현우, 장주빈, 최민석, 최선웅, 허지웅, 홍승민		
주요안건	1. 제안대회 평가회의 2. 상정안 의결 3. 상임위원회 본회의 제출안 의결		
회의내용	**1. 제안대회 평가회의(의원의 발언을 최대한 그대로 기록)** - 최선웅 의장 : 작년 제안대회의 평가를 넘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 반영 비율이 적은 것 같다. 네티즌 혹은 청중 평가단 점수로 순위가 갈리는 것 같아, 인기투표가 된 것 같다.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상금이 필요할 것 같다. - 박주형 의원 : 심사위원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심사위원 사전교육이 없어서 조금 부적절한 말이 있었던 것 같다. 4대 행복의회는 대표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중 네티즌 평가가 줄여도 될 것 같다. - 홍승민 의원 : 교육지원청 국장 이셨던 심사위원 분이 제안대회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심사위원으로 교수님 등 여러 분들이 오신 것은 좋지만,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의원이나 수행능력이 있는 분이 오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노동인권 관련 정책이 2가지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노동인권 관련 정책이 있는 데 존재여부를 모르고 제안 하는 것 같다. 청소년 심사위원이 더 많아야 할 것 같다. 청중평가단 혹은 네티즌 투표를 줄여야 할 것 같다. - 김선율 의원 : 심사위원의 인원 수가 조금 많았던 것 같다. - 김서영 의원 : 제안서 기준에 청소년의 삶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강조)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청중평가단 위치가 안 좋았다. 팀 발표자들이 뒤로 가고 청중평가단 위치가 앞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자리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박성원 의원 : 티모태 팀에서 예선 때부터 좋았다고 하고 발표 할 때도 좋았으나 청중평가단과 네티즌 평가가 너무 인기 투표여서 정말 좋은 정책도 무시되는 것 같다. 따라서 심사위원 점수 반영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 장주빈 의원 : 심사위원들의 냉철한 평가와 발언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 발표 때 잘 발표했던 팀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청중들이 너무 산만했고, 행복의회 의원들도 밖에 많이 나가있던 것 같다. **2. 혁신위원회 의제 상정안 의결** 1) 조직도 개정안: 조직도 내 TF팀 추가 ⇒ 재적인원 20명, 출석인원 18명, 찬성 18명으로 가결.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 개정안 제19조 (불신임) ③ 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불신임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시, 제소를 당한 사람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추가 ⇒ 재적인원 20명, 출석인원 18명,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3. 상임위원회 본회의 상정안 심의 결과 1) 환경복지상임위원회 ① 귀갓길 안전 TF팀 조례안 ⇒ 재적인원 20명, 출석인원 18명, 찬성 18명으로 수정 가결 . ②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 재적인원 20명, 출석인원 18명, 찬성 18명으로 수정 없이 가결. 2) 교육문화상임위원회 ①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재적인원 20명, 출석인원 18명, 찬성 18명으로 수정 가결. ② 성 문화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재적인원 20명, 출석인원 18명, 찬성 18명으로 수정 가결. ③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적인원 20명, 출석인원 18명, 찬성 13명, 기권 5명으로 수정 가결. 3) 인권권익상임위원회 ① 참여예산제 ⇒ 재적인원 20명, 출석인원 18명, 찬성 18명으로 수정 없이 가결. ② 경기도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 재적인원 20명, 출석인원 18명,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수정 없이 가결.
결정사항	위와 같음
건의사항 및 기타	-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최소인원 5인 건과 벌점 0.25점 건에 관하여 혁신위원회에 요청. - 본회의 발표자료(TF팀 수정본, 시청각자료, 시나리오, 자유발언, 개회사, 경과보고, 폐회사, 참여소감) 12월 2일 일요일까지 제출.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3차 회의록

일 시	2018.12.8.(토) 09:30 ~ 11: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
진행자	최선웅 의장	기록자	이현우(총서기)
참석자 (총 14 명)	김민채, 김범진, 김서영, 김선율, 김정화, 박성원, 양경민, 양수진, 엄효정, 이현우, 장주빈, 최민석, 최선웅, 홍승민		
주요안건	1. 공지사항 2. 본회의 리허설		

회의내용

1. 공지사항
   -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간담회 답변자료 공유

연번	주제	답변내용	반영여부
1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청소년재단 행복의회 담당자에게 행복의회와 협의 요청하여 자료 준비중에 있으며, 협의 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진행 할 예정임.	추진예정
2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편성의 청소년 참여방안	- 2018. 10. 2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및 시행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청소년 위원회)에 따라,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후 추진예정임	반영
3	「성남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신설 예산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는 용인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 추진할 예정임. · 서울특별시는 별도 조례없이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 4조에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청소년 관련 조례가 많아 통폐합이 필요 - 우리시에는 센터가 많아, 동일한 업무 혹은 비슷한 연령일 경우 업무를 통합 운영 할 필요가 있어, 현재 청소년 성문화 센터를 신규 설치하기 보다는 성남시 상담복지센터 확장 이전과 병행 검토예정	추진예정
4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개정	- 2016년 11월부터 성남시의회 여성의원과 성남여성의전화 등 11개 여성복지시설 대표가 「성평등 조례」로 개정하기 위하여 수차례 협의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4월에 「성남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관련 의원 발의를 추진하였으나 여성의원 간에도 성평등은 성소자를 포함하는 정책이라는 의견과 이에 따른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반발을 우려하는 등 의견 상이로 중단된 상태임.	추진예정

		- 이에 조례 명칭 변경을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구현하는 조례로 일부 개정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진보 여성단체에서는「성평등 제일도시 성남」조성을 위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성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향후「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개정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 후 추진 예정임.	
5	「성남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디자인」조례 개정 및 「성남시 안전 귀갓길 조성 조례」신설	-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성남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분야의 제도(조례 포함),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향후 추진 할 예정임. - 청소년행복의회 정책제안의 조례 개정 제안내용은 향후 제도 개선시 면밀히 검토 예정	추진예정
6	「성남시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신설	- 상위법령 근거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청소년 교통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통행자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의거 불가한 사항임.	불가
7	「성남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조례 신설 정책 제안은 기존「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1994.12.31. 조례 제1340호)되어 있음.	불가

2. 본회의 리허설 및 피드백

- 개회사: 몇 개의 문장에 대해 필요한 단어 추가와, 문장 순서 재배열이 필요.
- 경과보고: 중의성이 우려되는 문장 수정 필요.
- 자유발언: 장주빈 의원 자유발언 시각자료 문제인식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김서영 의원 고등학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의응답: 발표에 대한 질문 준비 필요.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질의응답 질문 다음 전체회의까지 생각해오기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4차 회의록

일 시	2018.12.15.(토) 09:30 ~ 11:30	장 소	성남시의회 1층 전체회의실
진행자	의장 최선웅	기록자	이현우(총서기)
참석자 (총 16 명)	김민채, 김범진, 김서영, 김선율, 김정화, 박주형, 양경민, 양수진, 엄효정, 이해인, 이현우, 장주빈, 최민석, 최선웅, 허지웅, 홍승민		
주요안건	1. 본회의 리허설 2. 요청 사항		
회의내용	1. 본회의 리허설 - 개회사: 수정 사항 없음. - 경과보고: 박성원 의원 불참. - TF팀 발표: 전체적으로 TF팀 준비가 많이 부족함. *귀갓길 안전TF팀 등 연극이 있는 팀은 연극 준비가 많이 부족하여 연습이 필요하다 판단됨. *민주시민교육TF 팀과 CS TF팀은 시나리오 제출이 늦어 발표 준비가 많이 부족함. *교통보호구역 TF 팀 수정 사항에 대해 수정하지 않았음. ⇒ 다음주 중 연극 팀 리허설 별도 진행 - 자유발언: 수정 사항 없음. - 질의응답: 질문자로 김선율 의원, 엄효정 의원, 안재훈 의원으로 결정됨. (질문은 2018. 12. 17 저녁 10시까지 제출) 2. 요청 사항 - 전체적으로 본회의 준비가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본회의 준비할 것을 당부.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5차 회의록

일 시	2019. 1. 12.(토) 10:00 ~ 12:30	장 소	성남시청소년재단
진행자	최선웅	기록자	김범진
참석자 (총 14 명)	김선율 김범진 김정화 김서영 최선웅 홍승민 안재훈 이해인 양경민 양수진 엄효정 박성원 박주형 허지웅		
주요안건	혁신위 상정안 의결, OOO의원 해촉 여부 전체의결		
회의내용	1. OOO의원 재심 해촉 여부 전체회의 의결 - 재적인원 16명, 참석인원 13명,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주문 : 본 투표 결과에 따라 OOO의원의 의원직은 복권. 2. 미디어특별위원회 통폐합 및 특별위원회 기간 변경에 대한 상정안 - 재적인원 16명, 출석인원 14명,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주문 : 본 투표 결과에 따라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폐지. (2019/2/28일 부로) 3. 의제발굴특별위원회 (가칭) 설치 (위원회 명칭은 조건부)에 대한 상정안 의결 - 재적인원 16명, 출석인원 14명,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주문 : 본 투표 결과에 따라 의제발굴특별위원회 (가칭)은 설치. 3-1. 의제발굴특별위원회 (가칭)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 1).의제동근특별위: 1명 거수 2).의제찾기특별위: 0명 거수 3).정책연구특별위: 11명 거수 4).기권: 2명 거수 주문 : 의제발굴특별위원회 (가칭)은 정책연구특별위로 명명. 주문 : 미디어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이다. 4. 혁신위 상정안 의결 ; 행복의회 규정 개정안-(1인 1TF 관련) 상정안 의결- 재적인원 16명, 참석인원 14명,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주문 : 본 투표 결과에 따라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은 위와 같이 개정됨. 5. 윤리위 판단규정 개정 상정안 의결 항목 8 -지각 조퇴 사전공지+증빙 2회 시 0.5점을 1회 0.25점으로 간소화 - 재적인원 16명, 참석인원 14명,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주문 : 본 투표 결과에 따라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위원회 판단규정은 위와 같이 개정됨. 5-1. 윤리위 벌점규정 개정 상정안 의결 징계위 회부 이후 벌점은 3점을 부여하되 3점 초과 시 다시 회부. - 재적인원 16명, 참석인원 14명,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주문 : 본 결과에 따라 각 규정들은 개정되었음을 선포함.		

	6. 제 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의장(당연직), 부의장(당연직), 윤리위원장 홍승민 의원, 환경복지상임위원장 안재훈 의원 이상 4명으로 구성. 7. 해단식 + 해단워크숍 - 일시 : 2월 중으로 미정. 추후 공지 예정 - 해단식 :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결정.(의장이 준비에 모든 책임을 짐) - 해단워크숍 : 전체 일정을 거수로 결정. 1박2일로 진행 : 재적인원 16명, 참석인원 14명,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복수투표) 1박2일로 결정 당일귀가인원수요조사 : 재적인원 16명, 참석 14명, 당일귀가 4명 8. 본회의 평가회의 - 전체적으로 양호했다. - 리허설 시작 직후 모든 의원이 자리에 착석하도록. - 추가 홍보를 통해 방청석이 모두 차는 것을 목표로 함.
결정사항	위와 같음
건의사항 및 기타	기타) 허지웅의원이 본 전체회의를 통해 의원직이 복권되어, 회의록 중간부터 재적인원과 참석인원이 변경됨.

제3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명단

2018년 12월 기준 / 전체 : 16명 (중 : 6명 / 고 : 10명)

구분	구분	성명	비고
수정구 4명	숭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양수진	
	수진중학교 3학년	김범진	
	성일고등학교 3학년	안재훈	
	판교고등학교 3학년	김선율	
중원구 4명	효성고등학교 2학년	엄효정	
	풍생고등학교 2학년	박주형	
	효성고등학교 2학년	최선웅	
	동광고등학교 2학년	김정화	
분당구 8명	야탑중학교 2학년	최민석	
	하탑중학교 3학년	박성원	
	이매중학교 3학년	이해인	
	야탑중학교 2학년	장주빈	
	성일정보고등학교 2학년	허지웅	
	이매중학교 3학년	김서영	
	수내고등학교 3학년	양경민	
	수내고등학교 3학년	홍승민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보고서
발행일 : 2019년 2월
발행처 :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031-729-9054
http://www.www.snyouth.or.kr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